

2003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

2003. 3. 11~13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Sungkonghoe University Pittsburgh Hall / National Assembly Building



주최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친우봉사회(AFSC) **후원** :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Organized by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Center for Human Rights and Peace,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KSCO), Society for the Research of Human Rights Polic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행 · 사 · 일 · 정

● **3월 10일 환영만찬** 늦은 6시 철학카페 느티나무, 사회: 민변 오재창 변호사

● **3월 11일 첫째날**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 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세계 현황과 전략” 사회 : 한흥구 교수

09:30-10:00 개회사, 환영사, 참가자소개

10:00-11:30 각 국의 병역거부현황 및 증언

- 이스라엘 (아미르 지볼 Amir Givol)
- 유고슬라비아 (이고르 세케, Igor Seke)
- 한국 (유호근, Yu Ho-Gun)

14:00-14:20 다큐멘터리 상영 ‘(가제)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14:20-15:20 <기조발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최근 현황과 전망

- 안드레아스 스펙 Andreas Speck (반전인터내셔널, WRI)

15:30-17:30 <토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 기본발제 : 제임스 라일리 James Reilly (미국천우봉사회, AFSC)

● **3월 12일 둘째날**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대체복무제도의 사례와 한국의 가능성” 사회 : 임종인 변호사

09:30-10:00 개회사, 환영사(효림스님)

10:00-12:00 <기조발제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 레이첼 브렛 Rachel Brett (퀘이커스, Quakers)

<기조발제2> UN,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 루씨에 비에르스마 Lucie Viersma (UN인권고등판무관실)

13:30-15:30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 독일 - 페터 토비아슨 Peter Tobiassen (독일 병역거부자 지원연대)
- 대만 - 청 타이 리 Chung Tai Li (대만 병무청 부청장)

15:45-16:30 패널토론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개혁국민정당

16:30-17:30 전체토론

17:30 폐회사

● **3월 13일 셋째날 - 연대, 현장을 찾아서**

09:00-10:00 영등포 구치소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특별면회)

10:00-12:00 기자간담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18:00-21:00 송별만찬 및 연대를 위한 문화의 밤 서울대학교

번역을 맡아 수고해주신 분들

정원교, 신해경, 김형렬, 이수지, 홍영일, 이정현(서울대), 김기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종익(동성애자인권연대), 느림, 오리, 홍창욱, 정용욱, 손상열(이상 평화인권연대) 외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Program

● **10.March Mon** 6:00 pm **Welcome reception** Venue: Neutinamu

● **11.March 1st Day (Tue)** Venue: Pittsburgh Hall, SungKongHoe University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O movement"

Moderator: Honggoo Han (SungKongHoe University)

09:30-10:00 Welcome address/ Rev. Hyorim (KSCO)

10:00-11:30 Status of CO movement and national initiatives with testimony

- The Former Yugoslavia (Igor Seke)
- Israel (Amir Givol)
- S. Korea (Hokeun Yoo)

11:30-12:30 Discussion

14:00-14:20 Film screening

14:20-15:20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O movement / Andreas Speck (WRI)

15:30-17:30 Forum/Discussion: Strategy planning of CO movement /James Reilly (AFSC)

● **12. March 2st Day (Wed)** Venu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ses of alternative services, the possibility of Korea"

Moderator: Jongin Im (MINBYUN)

09:30-10:00 Opening remarks, Welcome address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10:00-12:00 Meaning and History of C.O to Military Service

- Rachel Brett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Quakers))

UN,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 and Practices of Alternative services

- Lucie Viersma(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3:30-15:30 Cases of alternative services

- Peter Tobiassen(Zentralstelle fur Recht und Schutz des KDV, Germany)
- Chung Tai Li(Vice-Representative of Conscription Administration, Taiwan)

15:45-16:30 Standpoint of each political Party on CO

16:30-17:30 Floor discussion

17:30 Closing remarks

● **13. March 3st Day (Sat)**

09:00-10:00 Visit to the Seoul Detention Center interview with a c.o. imprisoned

11:00-12:00 Press Conference Venue: Neutinamu

12:00-14:00 Meeting with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8:00-21:00 Farewell Dinner/Solidarity Night

환 · 영 · 의 · 말 · 씬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효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대회의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감옥에는 1500여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지만, 최근에는 비종교적인 동기에 기초한 새로운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인들만의 행동양식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심성에 기초하는 신념의 발현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한국사회에는 일제식민지시대로부터 군부독재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로 인한 신체적 구속과 정신적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해마다 증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 진정성에 기초한 이 행위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존엄의 문제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8개국의 해외참석자가 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자신 스스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거나 혹은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활동과 정책집행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곧 병역거부 행위가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을 증명합니다. 이렇듯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대와 공간, 종교와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 속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인류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류에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분단국가입니다. 남과 북의 이념대립은 400여만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던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가슴 아픈 경험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피폐한 전쟁경험은 30년 넘게 이어진 군부독재정권의 국가안보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며 한국사회에 강력한 군사주의, 군사제도, 군사문화를 광범위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그것은 신성화된 징병제를 통해 유지,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반국가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탄압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대다수 국민은 물론 진보적인 사회운동세력에게서도 관심의 영역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80년대의 전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확산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드디어 2001년 봄, 평화와 인권의 햇살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1만여 병역거부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끝내 한국 국민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시키고 민간대체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2002년 2월 4일, 40여개 종교·평화·인권단체와 개인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연대회의는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참가단을 파견하여 한국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제도적 인권보장의 현실적 방안인 대체복무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이번 국제회의의 사전행사로써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장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사법부의 형집행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병역거부자들의 50%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감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연대회의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민간대체복무의 길을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도는 현역복무 인원의 30%에 달하는 인력을 비전투분야의 공공영역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해 500여명이 채 안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민간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징병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분단국으로서 오래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그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를 통해 그것은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여러분, 외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평화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이번 행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화와 만남을 통해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적 공공이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찾아 빛내주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효 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공동대표

한글본 차례

■ 해외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2/	반전인터내셔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안드레아스 스펙
4/	미국친우봉사회(AFSC)와 동아시아 퀘이커 국제사무소 프로그램	제임스 라일리
6/	새로운 윤곽운동-문명화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운동	아미르 지볼
9/	반군사주의 제작소와 이고르 세케	이고르 세케
1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사무소	페터 토비아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세계 현황과 전략

12/	2003년 이스라엘 병역거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아미르 지볼
20/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이고르 세케
28/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유호근
32/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안드레아스 스펙
4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제임스 라일리
5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역사	레이첼 브렛
56/	국제 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대체 복무제도의 시행	루씨에 비에르스마
71/	독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페터 토비아센
81/	중화민국시행 대체복무제도 소개	청 타이리

반전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안드레아스 스펙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전인터내셔널(이하 WRI) 정책의 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WRI의 선언은 어떤 군대나 무장세력에도 복무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외침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의 외침입니다.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이 조차도 거부하든지 간에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합니다. WRI는 살인을 거부하고자 하는 한 개인의 동기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서 전쟁과 전쟁준비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결심에 대해 그 가치의 경중을 판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반대

WRI는 그 어떤 종류의 전쟁 - 한 국가에 의해 벌어지는 전쟁은 물론 해방군의 전쟁이나 연합국들의 지원 하에 벌어지는 전쟁, 심지어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이라고 불리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아무리 수사적으로 숭고하게 표현될지라도 늘 몇몇 권력집단에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고통과 파괴를 수반하고, 약탈과 조직범죄를 발생시키며 가치전복과 새로운 지배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RI의 프로그램인 ‘살인을 거부할 권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 조직된 단체들과 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범위의 활동들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운명처럼 되어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핀란드, 스페인 그밖에 다른 여러 국가에서 수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인정 기준에 맞출 수 없거나 어떠한 대체복무 수행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혹은 국가나 유사국가체의 억압으로 투옥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

부 정보'는 이메일(majordomo@wri-irg.org로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 메일링 리스트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이나 웹사이트 wri-irg.org/cgi/news.cgi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소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종종 그들의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망명의 사유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들의 나라로, 즉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상황으로 다시 추방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망명의 사유로 허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WRI는 자국의 병역에 관한 정보, 징병회피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에 관한 정보 등을 제시하며 망명을 요구하고 망명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 지원 기구들의 연합체 역할로서 전 세계의 징병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자료화하는 CONCODOC(Conscrip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Documentation Cent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실은 전 세계 단 하나뿐입니다. 웹사이트 wri-irg.org/co/form.htm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CONCODOC의 180여 국가 보고서를 온라인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은 스페인어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캠페인 지원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새로운 운동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WRI는 가장 중요한 작업의 하나로서 새로운 병역거부운동들 - 연대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활동가 교육, 그리고 활동가들의 경험 교류 -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같은 활동이 터키(특히 오스만 무라트 Osman Murat의 구금기간 동안)와 발칸반도 국가들에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서의 투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들은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WRI는 두 가지 국제행동의 날 - 평화운동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날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날 - 을 조화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5월 15일 행동의 날은 1982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날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위한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됩니다. WRI는 대개 매년 마다 한가지 특정한 투쟁에 중점을 둡니다. 동시에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로 복역했던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합니다.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엽서를 보내고, 이들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전쟁 및 전쟁준비에 반대한다는 수감자들의 평화적 입장을 지지하는 행사입니다.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은 1950년대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WRI가 수감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것을 요청했던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와 동아시아 퀘이커 국제 사무소 프로그램

제임스 라일리

퀘이커(Quaker)의 독립 조직인 미국친우봉사회(이하 AFSC)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17년 설립되었다. 오늘날 AFSC는 전 세계 22개 국가와 미국 내 43개 지역에서 봉사, 발전, 사회정의, 평화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오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후원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AFSC의 프로그램이 거대한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지닌, 그리고 가난과 무기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닌 미국의 지역사회 내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AFSC는 이민자, 밀입국 노동자, 소농, 농장노동자, 망명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굶주리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는 노숙자, 실업자들을 대변한다. AFSC는 인디언 보호구역, 고등학교, 아팔래치아와 뉴멕시코 북부와 같은 시골 지역, 번잡한 도시, 감옥,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공장 등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FSC의 해외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전쟁과 억압의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 없이 식량과 의료를 제공해 왔다. 1947년, AFSC는 영국 친우봉사회와 함께 전 세계 퀘이커 교도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이름 없는 자들로부터의 이름 없는 자들에게로의 소리 없는 도움”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오늘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캐리비안,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AFSC 담당자들은 그 곳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퀘이커 국제사무소 대표부(Quaker International Affairs Representatives, 이하 QIARs)는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평화와 정의, 화해를 촉진하고 있다. 그들은 민중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 그 중 동아시아 퀘이커 국제사무소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이웃 공동체 설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한반도의 화해, 대화와 지역적 안보구조를 통한 지역 내 분쟁의 해결, 그리고 넓게는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아시아 QIARs는 1994년 이후로 지역 내 시민사회조직 간의 교류를 촉진해왔다. 그들은 무기교역과 안보 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지원해왔으며, 평화교육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학자와 관련 활동가들을 함께 베이징으로 초청하였고, 한국과 중국 환경운동단체 간의 협력을 도왔다. 또한 한국의 NGO와 협력하여 갈등 해결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train-the-trainer’를 1년 반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증폭되었던 미국과 중국사이의 긴장은, QIARs가 중국의 여러 단체와 접촉을 늘리고 미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에 항의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QIARs의 대표단은 북한과 미국을 왕래하며 양국이 좀 더 폭넓고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 중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 전반을 광범위하게 둘러보며 작성한 여러 분석과 경험들을 각종 연설과 글 등을 통해 미국 내 지지자들과 공유한다.

갈등을 평화적이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AFSC 프로그램은 억압받는 자이든지 억압하는 자이든지 간에 모든 삶은 신성하다는 웨이커의 신념을 반영한다. 미국 내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AFSC 활동가들은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만들어 내고 미국의 평화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한다.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들을 찾아내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여론 형성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AFSC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이용하여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와 언론매체들의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뉴욕의 웨이커 국제 유엔사무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계'라는 원칙에 헌신하려는 친우봉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AFSC는 북미지역의 23개 웨이커 연례모임(지역 교회의 본체들)에 속한 180명의 웨이커교도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다. AFSC의 국제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있으며 여덟 개 주에 지부를 두고 있다. 단체의 구성원으로 꾸려진 AFSC 이사회는 AFSC의 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한다. 수많은 위원회들은 4백 명 이상의 남녀 활동가들과 함께 AFSC의 운영을 감독하고 상의한다. AFSC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지원하고 있다. AFSC의 연간 예산은 약 3천3백8십만 달러이다.

웨이커교도들은 양심, 개인의 종교적 체험 그리고 공동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의 권위를 사도신경이나 전통의 권위보다 우위에 둔다. AFSC는 종교친우회의 숭고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웨이커 회의에 의해 지도되고, 웨이커교도와 AFSC의 사명을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과 함께, AFSC는 17세기 웨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가 “네가 가는 모든 지역에서, 장소에서, 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네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귀감과 모범이 되어라 : 너의 삶이 그들 모두 가운데에서 설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하나님이었다는 대답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걷게 될 것이니.....” 라고 친우들에게 역설한 말씀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AFSC은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능성을 존중한다. 이는 구조나 이데올로기보다는 사람을 강조함을 의미한다. AFSC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웨이커의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새로운 윤곽 운동’ (The New Profile Movement) : 문명화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운동

아미르 지볼

New Profile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주목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군사주의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신념은 자연스럽게 우리 단체를 만들게끔 했습니다. 이 운동의 주체인 여성주의자, 남성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대중적이며,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New Profile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를 반영합니다; 전쟁과 무력으로 군사화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모든 민중의 권리가 동등하게 고려되고 촉진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행위가 종결되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영국가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확실한 평화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군사화된 사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파트너가 계속해서 끝없이 동원되는 삶을 살 필요도, 또한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할 필요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상황이 정치인들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속물인 군대에 병사들이 충원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순종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 책임자들이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 군대를 이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한, 우리는 결코 동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원을 위해 아이를 기르지도, 동원된 파트너와 형제, 아버지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영국가에서는 평등한 시민과 덜 평등한 시민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충부는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남자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이들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전사로서 그들은 특권화된 지식을 독차지하도록 되어있고, 정책결정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안보’와 관련된 정책에 의심을 갖거나, 국가의 막대한 국방예산 혹은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순진한’, ‘히스테리컬한’, ‘무지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자진해서 입대한다는 기본원칙에 감히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는 병영국가에서는 거의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법으로 부정됩니다.

우리의 '무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영속시켜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삶의 보장을 위해 고통스런 양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린라인 너머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요된 이스라엘 주권을 실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군대, 경찰, 보안대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집을 부수고 건축과 개발권을 부정하며 그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부여된 특정 역할들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폭넓은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수 천명의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현재 징병이나 전투참여 의무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의 군복무의 의미와 자기 자신 사이의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선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군대에 부적합하다거나 부실한 건강을 이유로 면제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법은 남성들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징병법을 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남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젊은 여성들 또한 병역면제위원회의 질문에 곤란해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은 모든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비정부적, 자율적 단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사회공동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입대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입대시키고 전쟁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적인 시민 교육을 위해 평화와 갈등해결의 실례를 가르치는, 그런 근본적으로 변화된 교육 시스템을 원합니다.

우리의 활동

New Profile은 부서별 체계를 두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책임이 부여된 직위인 사무국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의 참여가 자율적입니다. 다른 지위들과 모든 위원회의 업무는 위계적이지 않은 소규모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보수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합니다. 연락망을 만들고 정보를 모으는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팀은 모금 활동을 합니다.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회의 장소는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하며, 각 회의는 매번 서로 다른 구성원의 집에서 열립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돌아가면서

회의 내용을 적고, 이후에 타이핑된 회의록을 이메일로 돌려 회람합니다. 이러한 로테이션제도는 권력을 분배하고 권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1. 징병제 재고: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구별 없이, 군대징집에 저항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제공.
2. 탈군사화 고취: 군사주의의 역효과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켜, 새로운 관점을 확고하게 공공 의제화 하고, 군대와 이스라엘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에 영향을 준다. 비폭력과 비군사화 교육에 강조점을 둔다.
3. 스터디 그룹과 성인 커리큘럼 개발: 페미니스트 스터디 그룹들 사이의 네트워크 설립.
4. '올바른 평화를 위한 여성 연합'과의 교류: 이스라엘 군대와 경찰의 호전적 공격에 대한 항의, 차별철폐 조치를 위한 연대활동

연락처

New Profile, P O Box 3454 Ramat Hasharon 47100.

<http://newprofile.org>

newprofile@speedy.co.il

후원 계좌번호

HaPoalim Bank, account no. 421121, Branch 769, Trumpeldor St., Ramat Hasharon, Israel

반군사주의 제작소와 이고르 세케

이고르 세케

개인 소개

1975년 10월 23일 출생.

노비 사드(Novi Sad)에 있는 정보과학 대학과 베오그라드대학교 철학부 인류학과에서 수학.

지금까지 저는 지역 내 유일한 반군사주의 뉴스레터인 'Prigovor!'('거부'라는 의미)의 편집자 또는 공동편집자로 일해왔습니다. 'Prigovor!'는 베오그라드(역자 주-유고슬라비아의 수도)에 있는 여성반전단체 '우먼 인 블랙'(Women in Black)에 의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으며 현재까지 열 번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우먼 인 블랙'의 양심적 병역거부 그룹 활동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참가해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승인을 위해 3만 명으로부터 입법발의 서명을 받았고, 웹 페이지(www.antimilitarizam.org)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리 시위에 참가하고, 전단지과 소책자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유고슬라비아 NGO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나는 수많은 거리시위와 원탁회의, 기자회견, 세미나(유고연방 및 해외에서) 등을 조직하고 참가했습니다.

2002년 9월에 저는 징집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복과 무기 수령을 거부하며 징집에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만으로 병역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후 반전인터네셔널(WRI),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 사무국(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이하 EBCO) 그리고 몇몇 다른 조직들은 저의 병역 면제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등군사의료위원회로부터 병역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 면제되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는 EBCO, RAI, Balkans Ayuda Obrera 등과 같은 바르셀로나의 몇몇 평화운동단체에 의해 구성된 '동남부 유럽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to Develop CO in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EBCO Balkan'이라는 EBCO의 지부를 베오그라드에 설립했습니다.

단체 소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반군사주의 제작소'(Antimilitaristic Manufacture)라는 단체입니

다. 우리는 2002년 6월에 반군사주의와 평화주의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전국 NGO 네트워크 내에서 2년 이상 비공식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그룹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그룹은 주로 각종 자료들(단행본, 소책자,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는 음악가들의 CD,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세르보크로아티아어(역자주-유고슬라비아에서 사용되는 슬라브계의 말) 웹페이지 www.antimilitarizam.org 운영 등)을 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외국 자료를 번역 해왔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내 저술가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반군사주의와 평화주의 이슈에 대한 저작들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룹은 보스니아의 'Zasto Ne?', 크로아티아의 '반전 캠페인'(AntiWar Campaign), 마케도니아의 '평화행동'(Peace Action) 등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지역 네트워크인 '평화를 위한 거부'(Objection for Peace)를 설립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 사무소

페터 토비아스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 사무소'(Zentralstelle fuer Recht und Schutz der Kriegstverweigerer aus Gewissensgrueden e. V.)는 독일에 징병제가 재 도입된 직후인 1957년에 설립되었다. 이 사무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26개 단체들의 공동 조직으로서, 인권단체, 몇몇 교회의 청소년 단체, 노동조합과 정당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반전평화단체들의 조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 사무소의 활동은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의회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와 정부당국이 도입한 차별적인 법규 폐지 운동을 지원한다. 중앙 사무소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전하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한 이들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게 된다.

중앙 사무소는 징병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집총이 강요되지 않을 때만이 최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 사무소의 재정은 회비(10%), 기부금(50%), 각종 자료 판매(30%), 그리고 기타 수입(10%)을 통해 충당한다. 사무소에는 3명의 상근 활동가가 있으며, 단체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만여 명의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주소

Zentralstelle fuer Recht und Schutz der Kriegsdienstverweigerer aus Gewissensgrueden e.V.

Dammweg 20

D-28211 Bremen

Germany

전화 : (0)421/340025 팩스: (0)421/3479630

이메일: Zentralstelle.KDV@t-online.de

인터넷: www.Zentralstelle-KDV.de 또는 www.wehrpflicht-nein-danke.de

2003년 이스라엘 병역거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아미르 지볼

들어가며

저는 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몇 가지 관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많은 면에서 분할되어 있고, 주요하게는 남녀간의 성역할 분할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나머지 인종, 주되게는 팔레스타인 소수민족과 그 하위그룹간의 국가적/인종적/종교적 분할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분할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에게 특징을 부여하는 몇 가지 독특한 이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주요하게 미디어와 법률시스템 내에서 병역거부위원회의 업무,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지위, 대체복무와 병역거부의 일반적 개념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이스라엘 사회의 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복무는 모든 영주민, 주요하게는 유대인 남성과 여성, 드루즈인 남성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나 지원자들 중 정부방침으로 면제되는 사람들(건강에 문제가 있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 기타)도 있습니다.

남녀모두 18세에 군복무에 소집되고,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 동안 복무하게됩니다. 또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45세까지 대개 일년에 한번 예비군을 소집됩니다.¹⁾

모든 이들이 입대한다고 생각하지만(정부는 군대를 국민군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얼굴'이 군복무 면제비율을 추정하건데, 징집되기 전 대략 45%가 면제되고²⁾ 나머지 10%가 복무기간동안 면제됩니다. 면제된 이들 중 어느 정도가 병역거부자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³⁾, 병역거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심각한(그리고 공공연한) 위협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적, 신체검사상의 분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병역거부를 허락하도록 작용하는 듯 보임

- 1)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몇몇 여성 또한 예비군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늦어도 24세까지는 예비군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법에 의하면 이 연령은 51세이나 부대별로 실제로 45세에서 41세까지로 적용된다.
- 2) 이 수치는 자동적으로 병역에서 면제되는 팔레스타인인들, 인구의 20%를 포함한다. 그밖에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되거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군은 30세 이상의 이들을 입대시키지 않는다) 경우들이 포함된다.
- 3) 실제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는 군대가 데이터를 기밀로 취급하며,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이 병역거부자임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나 혹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니다.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에서의 병역거부도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합니다.(예를 들면 아나키즘, 완전채식주의, 불교). 그러나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병역거부자를 완전거부자나 선택적거부자로 구분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완전거부자는 평화주의자,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떤 상황하에서의 폭력에도 반대하는 자이며,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의 어떤 역종에서의 복무도 거부합니다. 반면 군대내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채식주의자와 같이 선택적거부자는 자신의 신념이 이스라엘 군대의 어떠한 국면이나 상황을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완전거부자만을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이 조차도 심지어는 공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실제에서는 아닌) 선택적 거부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선택적거부라는 명칭은 대개 많은 사례 중 군대가 실행중인 특정한 정치적 결정, 그 중에서도 특히 팔레스타인 영토의 점령에 (도덕적 근거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를 정치적거부라 간주하여 붙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운동은 주로 네 가지 주요한 활동들로 이루어집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얼굴'은 이스라엘 사회의 탈군사화를 지지하는 운동이기에 운동의제의 일부로 모든 병역거부자를 지원합니다. '상급생의 편지(Shministim movement)'는 다양한 신념에 기반 하지만 공통적으로 점령에 반대하는 고등학교 상급생의 모임입니다. '예쉬그블(Yes Gvul)'은 1982년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한 것에서 출발한 운동이며, 지금은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중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용기(Courage to refuse)'는 예비군이 주축인 군인들의 모임으로 주로 점령지에서 저질러지는 전쟁범죄(점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에 반대하여 점령지 내에 배치되는 것을 거부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알려진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점령에 대한 거부를 병역거부의 이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은 정치적 거부자로 취급되어 개개인의 신념에 관계없이 선택적이며 불법적으로 간주됩니다.

여성 거부자들

우리가 전 세계 군복무에 대해 논할 때 종종 남성 병역거부만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⁴⁾ 남성이 유일하게 강제적으로 입영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가 징집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매우 다른 유형의 군복무를 수행하지만, 다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에 대해 논할 때도 우리 또한 대개 남성만을 언급하는데, 이는 최근까지 우리가 남성 병역거부의 양상에 대해 좀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의 병역거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보다 명확하게는 군복무에서 깊게 뿌리 박힌 여성에 대한 배타적 애국주의(chauvinist)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군복무 또한 지원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이것은 여성 병역이 대개 잉여노동이며 여성의 활동이 가사와 출산에

4) 최근 수단에 여성 의무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정될 때 사회를 좀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냅니다. 여성 군복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 때문에, 여성이 몇 가지 법적인 과정을 통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연히 여성은 결혼하거나, 임신하거나, 혹은 아이가 있으면 병역에서 면제됩니다. 정통 유대인 여성은 그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라 진술하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엄격한 조사 없이 군복무에서 면제됩니다. 여성 병역거부자는 여성병역거부위원회에 군복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그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끈질기게 도전한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은 이스라엘에서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 병역거부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여성병역거부위원회가 실제 (요청하는) 모든 이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더라도,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병역거부 신청자의 신념에 상처나 흠집을 내려는 불쾌하고, 창피스러운며 굴욕적인 과정(노골적인 언어적 욕설을 포함하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병역거부위원회의 업무가 무엇인지(예를 들면 초기 결정을 드러낼 권리), 신청자 권리, 심지어는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위원회의 존재와 같은 적절한 정보를 숨기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병역거부위원회 자체는 거의 배타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군 관계 인원들로 구성되어집니다. 많은 신청서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어지며 오로지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녀의 고결함과 결심을 테스트한다는 그럴듯한 목적으로 신청자의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거부되어집니다.

여성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쏟지 않는 동안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군대에 입영해야 할 것이며, 종종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매국노나 반사회적 인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신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 그들의 선택과 권리에 관한 적절한 정보 없이, 대개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성의 군복무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에게, 심지어는 여성주의자들에게조차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중점을 뒤야만 하는 병역거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 병역거부가 절대 쉬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며, 군사주의가 사회의 성별구분을 재생산하는 매혹적인 방법이 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 병역거부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성병역거부위원회

- 5)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병역거부를 찬성하지 않는다 말하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에 반대하며, 그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선택을 지지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불운하게도 실제로 병역거부의 지지자들은, 이론적인 단계에서 병역거부지지자를 반대할 때, 이러한 문제를 통과하기 힘들다.

이스라엘 사회의 성별구분은 남녀에 대한 서로 다른 모습의 기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보조적 위치에 국한되어있는데 반해, 남성 자신은 여러 업무 중 군대 내에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위치 지워집니다.(최고의 남성은 군 항공사에서 항공술 관련 복무를 하고, 최고의 여성은 군 조종사가 된다는 속담에서 명확하게 잘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적합한 유대인 남성은 군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따라서 남성 병역거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몇 번의 청원이 국방부에 제출되고, 1995년 병역거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방장관은 병역거부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스라엘 병역법의 조항들을 근거로 국방장관이 승인한 사람이면 누구든 군복무를 면제할 수 있다. 비록 이 법이 남성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법적 인정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는 명확한 법규 등의 법적 수임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폐지될 수 있고, 병역거부자들 석방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사실상 군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병역거부위원회의 존재와 그 법규에 대한 정보의 부재, 그리고 대개 군 당국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위정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원회에 병역거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병역거부 위원회와 달리 남성 병역거부 위원회는 평화주의자의 신청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거부의 다른 유형들은 그 이유조차 듣지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이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양한 이유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매우 차별적인 것이며 병역을 거부하지만 소위 병역거부의 승인에 의해 완벽히 거부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위원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떠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이 병역거부 위원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역거부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위원회의 실제적 절차들에 따르면(정해진 규칙들이 없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정치적거부자가 될 것이기에), 열렬한 채식주의자나 완벽한 채식주의자로 여겨질 것입니다.(비록 평화주의와 동물애호 사이의 관계가 정황적인 것일지라도) 또 평화주의자는 신체적으로 부피가 큰 사람(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낮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폭력적일 것이고 그래서 폭력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들이 위원회 설립 이전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위원회는 모든 신청들을 거부하려는 시도와는 별개로 자체 규정이나 일관된 무엇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일관된 이유도 없이 한 응급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봤을 때, 위원회 자체의 평화주의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평화주의자(혹은 누구든 그러한 신념을 반만이라도 가진 사람)가 그것을 정의 내리는지 사이에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보다 많은 걱정거리를 야기하는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명백한 정치적 의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은 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시험에 들게 하였고 특히 전쟁이나 극단

적인 폭력의 시기에 군복무를 요청 받았을 때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재의 전쟁상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그런 까닭에 선택적거부자로 여겨집니다) 병역거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위원회의 주요한 업무가 자신들의 본분에 따라 병역거부 신청서를 심사하기보다 병역거부 불가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찾는 것이 주 업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모든 위원회 구성원들이 신청인의 신념을 고려하기보다 군 관계자들의 필요에 의한 비공식 정책을 고려하는 군 인원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군대의 요구와 신청인의 군사적 유용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능력에 따라 임명됩니다. 이들은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있어 어떠한 훈련을 받거나 관련 소양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그러한 소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결국 위원회에 의해 군복무가 면제된 몇몇 사람(거의 예비군이 전부인)조차도 이러한 면제 사유가 병역거부에 의한 것이었다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부적합'을 이유로, 또 다른 몇몇은 마치 요구받아서 군복무를 마친 것처럼 단지 제대한 것으로, 나머지는 법적으로 제대한 것으로(제대통지서에 의하면) 군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누구도 병역거부로 제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 병역거부 위원회와 유사하게 남성 병역거부 위원회는 거의 비밀에 부쳐져 있고 심지어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군의 대다수에게조차 알려지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5년 이후 위원회 업무에서 약 250여명의 신청만이 취급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998~2000년간 위원회 업무에 관해 제출 받은 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신청의 8%만이 군복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115명 중 9명)⁶⁾ 세계의 다른 병역거부 위원회에 의해 처리된 업무와 비교할 때 8%의 군복무 면제 비율은 어이가 없는 결과입니다.(예를 들면 핀란드의 병역거부 위원회는 신청의 70%를 군복무 면제조치하고 매우 엄밀하게 이를 고려합니다)

병역거부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 외에 병역거부자가(그리고 다른 이들 또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체와 정신에 대한 의학적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는 군대의 의료면제 코드 "프로파일21(profile 21)"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처리와 달리 군은 건강을 이유로 한 면제에 관해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거부 위원회의 낮은 군복무 면제 확률에 직면할 필요 없이, 군복무를 피할 방법으로 이를 이용합니다. 누구나 복무할 곳(부대나 감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군복무에 부적합한 이들에게 군복무 면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적합" 위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부적합 정도가 덜한 사람들에게는 해외로 갈 가능성이나 소집시 단순히 나타나지 않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물론 부분적인 해결이 되겠지만 오히려 대개 단기 복역 후 "부적

6) 군복무가 면제되지 않은 신청자 중 10명은 부분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부분적인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가지 사례를 통해 부분접수의 의미가 한해 입영연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합”을 이유로 군복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 위원회에 신청하기보다는 병역을 피하는 다른 수단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우 법을 어겨야만 했고 아니면 최소한 정직하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수감된 병역거부자

남성 병역거부 위원회의 불쾌한 점 중 하나는 최근 이스라엘 군의 수장이 어떤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군은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진정한” 병역거부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관해 제기된 비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남성 병역거부자로 공표된 이들은 군복무를 면제받을 대체 루트를 이용할 수 없고, 병역거부 위원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엔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의 수감은 군대의 공식적인 정책이며 처벌, 강제입영 시도, 혹은 다른 의미로는 그들의 신념을 배반하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병역거부자 수감 절차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병역거부자는 지정된 군부대(보통 훈련소)에 도착해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혹은 점령지에서서 복무거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장교가 그에게 입대를 권유하고 이후 ‘항명’을 이유로 약 1달간 처벌받을 받게 됩니다.⁸⁾ 신병의 경우 그들은 재처벌과 재수감에 처해집니다. 이는 동일 범죄로 재처벌 받지 않을 시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병역거부자는 2~3번 수감(약 3개월)되고 이후 부적합 위원회에서 군복무가 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2~3번이던 수감횟수가 놀랄만큼 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몇몇 병역거부자는 7~8번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된 수감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에 의해 인권유린으로 여겨지지 않는 동안 병역거부자에게 선고되는 수감기간의 형량이 전적으로 병역거부자를 책임지고 있는 군장교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내외 압력이 군사법 당국의 반복적 수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짐은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이 이슈에 대한 압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⁹⁾

점령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그러나 군복무전반에 반대하지 않는) 예비군의 경우 그들은 보통 한번 수감되며(약 한달), 이후 집에 보내집니다. 그들이 다시 수감되는 경우는 부대가 재

7) 군사법정(marshal court)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피고인이 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하도록 하는 것이 법정의 기본이나, 그의 주장은 대부분 무시된다.

8) 물론 이러한 절차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군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정식재판을 피하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알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차라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록 이러한 절차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9) 수감된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활동지침들은 ‘새로운 얼굴’ <http://www.newprofile.org> 나 ‘상급생의 편지’ <http://www.shministim.org> 에서 접할 수 있다.

소집 되었을 때(보통 1년에 1번)가 유일합니다. 많은 경우 점령지 복무를 거부하는 예비군은 특별 고려대상이 되고 자신의 부대로부터 동떨어진 점령지 바깥에 배치됩니다.

감옥 안에서 병역거부자는 그들 신념에 대해 어떠한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직원과 다른 피수용자들은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해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이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의 원인이 되며 만약 감옥 관계자에게 협조하기를 거부했다면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독방감금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유니폼 착용이나 두발규정의 거부, 명령 불복종, 감옥 내 노동의 일부로 군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드루즈인 병역거부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인은 군복무에서 면제되거나 팔레스타인인은 드루즈인과 베두인 남성들은 군대에 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드루즈인을 의무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인으로, 권리에 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인인 이스라엘인과 비슷한 의무, 주되게는 장기병역의 의무를 가지며(여성은 제외하고), 각종 기금이나 시민권과 같은 문제에서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드루즈 남성의 입대는 1950년대 이 공동체의 전직 대표가 서명한 역사적 합의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¹⁰⁾.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드루즈 남성이 군복무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드루즈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혹은 단순히 그들 동료인 팔레스타인인과의 분쟁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루즈인 병역거부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를 취급하는 정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병역거부자에 비해 훨씬 가혹했으며,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는 보통 더 오랜 기간 수감되었다. 가혹한 처우에 대해 알고 있는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들 중 대다수는 더 오랜 기간 수감될지라도 병역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많은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들은 보다 가혹한 처벌의 공포 때문에 자기정부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체복무

이스라엘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에서 면제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국가복무(National Service)”에 참가합니다. “국가 봉사”는 군복무를 하진 않지만, 다른 시민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기여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설립된 1-2년 기간의 자발적 시스템입니다. “국가복무”를 이수한 사람들은 제대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래 “국가복무”는 정통유대인여성(앞에 언급했듯 신청서에 서명하면 자동으로 면제되는)이 병역에 대한 대체적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최근까지 “국가복무”는 국가복무법에 의해 정의된 법적 제도로서 오직 정통유대인이나 다른

10) 이 합의안은 아직까지 유효하나 현재 몇몇 대표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여성들에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면제된 남성 또한 “국가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 군복무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중동지방의 격한 전시상황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은 점점 시험에 놓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해 몇 가지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활동은 아제 시작입니다.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1998/77 결의안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 결의안의 모든 개별 조항을 실제 어기고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처우는 하나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이고르 세케

1. 역사적 배경 개요

2차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는 독자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유고슬라비아는 바르샤바 조약(the Warsaw pact)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지역의 유일한 사회주의국가이기도 했지만, 코민포름(Inform-Bureau or Cominform; 공산당 정보국)의 결정사항을 공공연히 반대했다. 때문에 소비에트연방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서방세계에 손을 내밀어야만 했다. 특히 전후 초창기 동안 유고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했다. 지리적으로는 나토회원국이나 바르샤바 조약가입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유고연방군은 '절대국방원칙-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면제될 수 없다'-에 기초한 독특한 군사원칙을 세웠다(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군으로 불리는 대다수의 군인들의 마음속에 이 원칙이 아직도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 국방원칙에도 이런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구유고산업의 상당 부분이 군사산업이거나 관련산업이었다. 다국적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공화국을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유고의 군사산업은 분산화되었다. 따라서 개별 공화국은 무기생산 및 개발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다.

게다가, 유고의 아이들은 '호전성'이 자랑스러운 '국민성'이라고 교육받았다. 하지만, 이 모두는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정책으로 군사화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 정책의 폐해는 불가피한 결과였다.

1980년대에 유고에 군축과 군사산업의 변화 바람이 처음으로 불었다. 이 변화의 목소리는 구 유고공화국 중 가장 진보적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몇몇 청년단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슬로베니아의 젊은이들은 모국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군축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고슬라비아 국군은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국방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한 토론조차 거부했다. 동시에 슬로베니아 젊은이들을 분리주의자나 반사회주의자 또는 외국정보기관의 첩보원이라고 비난했다. 1991년 슬로베니아의 유고연방 탈퇴 이후, 진정한 의미의 공공근로제가 곧바로 도입되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징집대상자의 50% 이상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베니아를 따라서 크로아티아도 1992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1995년 크로아티아가 수

년간 지속된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나기까지는 법리상으로만 존재했다. 크로아티아 징집대상자 중 40% 이상이 2002년 한 해 동안 대체복무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구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아직도 법적 제도 미비로 인해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구유고슬라비아국가들간에 일어난 전쟁기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탈영을 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 국외로 떠났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총살되었고 대부분 감옥에 가야 했다. 10년의 전쟁기간 동안 십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탈영을 선택했고, 삼십 만 이상이 동원소집을 피해 외국으로 떠났다.

2. 현재 상황

앞에서 밝혔듯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전면적인 도입에 실패했으며 보스니아에서는 아직도 대체복무제에 관한 이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의 경우 공통적으로 아래의 주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만 의무병역제의 범위 내로 국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기회는 영내 비전투분야 보직이나 군사경제기관에서의 복무와 같은 방식뿐이다.

징집대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병역거부 권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NGO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다. 반면 앞서 말한 국가들의 군부는 NGO를 외국 정보기관의 지부로 여기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군대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군축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¹¹⁾

‘군대문제’에 대해서 민간법원은 아무런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사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군대를 위한 병역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등군사의료위원회로부터 ‘병역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뿐이다.

보스니아의 경우, 대체복무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집행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징집대상자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극히 소수만이 대체복무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서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이 진행된 이유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몇몇 공동행동과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같이 벌여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의 단체들과 강한 연대캠

11) 유고슬라비아군대가 슬로베니아 젊은이들의 행동에 대해 취한 것과 같은 형태

페인을 조직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구헌법 137조와 유고슬라비아 군법 297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하고 있지만, 법적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분야 복무로 국한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NGO 네트워크를 결성해 3만 명 서명운동을 열었다. 3만 명은 YUCOM(인권 변호사 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수정과 유고슬라비아 군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안'의 국회입법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숫자이다. 이 입법발의안은 진정한 의미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대체복무제 기간을 군과 민간 영역 모두 동등하게 두고, 군복무 12개월과 대체복무 24개월로 제정된 현 복무기간을 똑같이 7개월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참가했다. 여기에는 여성주의 단체(위민 인 블랙 '(Women in Black)이 참가하여 10개 NGO가 이후 이 캠페인에 참가하는 동기가 되었다), 보즈보디나(Vojvodina) 사회민주동맹과 같은 정치단체, 인권단체, 학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가했다. 거리, 대학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가능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캠페인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락콘서트 같은 각종 이벤트도 개최했다. 캠페인의 주 타깃은 27세 이하 남성이었지만(27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여성의 반응이 가장 폭발적이었으며, 특히 이들 대부분은 군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 중년 여성들로 추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미 마친 사람들은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하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서명운동에 거부의를 나타내는 게 공통적이었다. 아직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복무제도의 조건보다는 복무기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방의회에서 입법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동참의원을 조직할 기회가 있었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 일반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캠페인의 목적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은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때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 등 모든 매체의 관심을 끌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유고슬라비아군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군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전투/비전투 보직의 병역의무조건은 그대로였고 대신 병역기간은 10개월과 18개월로 줄었다. 또한 총사령관의 권한은 거의 공화국 대통령과 비슷했고, 헌법은 현행보다 더 많은 사법권을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우리가 작성한 입법발의안이 연방의회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발의안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입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총사령부에 발의안을 전달해서 군측의 의견을 물었다. 최종안은 일반 병역의무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비전투분야 병역의무는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역의무조건은 두 가지 모두 변동사항이 없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으며 곧 새로운 가능성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구 유고연방이 세르

비아-몬테네그로 연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의 새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확실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우리가 연방정부에 신청한 입법발의안에는 국내외에서 거의 백여 단체가 참여했다. 입법발의안을 작성하는데 10개월이 걸렸으며, 발의안의 마지막 문단에 헌법에 있는 '징집대상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받는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하지만, 구 유고슬라비아군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사기관 내에서의 비전투분야 병역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캠페인에 새로운 분야를 첨가했다.

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의 활동영역을 대체복무제 도입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형태의 병역제도 완전 거부와 전쟁세 거부와 같이 군사제도를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다른 측면도 부각시키려 애썼지만, 우리와 함께 활동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대다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복무제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단체에서 복무할 수 없는 이유로 유고슬라비아군이 내놓은 공식답변은 매우 불공평했다. 군측은 특정 종파의 종교인만¹²⁾ 민간의료기관에서 복무하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들이 환자와 의료관계자들의 개종을 종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국방부와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군의 해명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법에 어긋난다. 우리는 여전히 군의 설명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군은 군외부 기관에서 복무한 대체복무자를 한 명도 증인으로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료기관이나 일반 구호단체, 장애인재활기관 등 여러 공익단체의 관계자를 찾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채용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세르비아의 여러 종교단체가 참가했으며, 우리가 얻은 조사결과 인터뷰에 응한 90%의 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민간기관 대체복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 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제의를 환영했으며, 대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곧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캠페인 기간 중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적십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고슬라비아 군사령부에서 NGO라는 이유로 적십자의 제의를 거절하였음을 알아내었다.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군대 자신임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대중화

우리의 활동과 활동전개상황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 여성반전 운동단체인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과 연대하는 양심적병역거부 운동단체로서 우리는

12) 군은 동방정교회와 카톨릭,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를 특정 종파로 간주한다.

지역 유일의 양심적병역거부 소식지인 '거부!(Prigovor!)'를 발행했다. 이 소식지는 NGO 네트워크를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전역에 배부되었다.

일반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리기 위해 수 천장의 전단지과 포스터, 브로셔 및 다른 매체를 이용해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강조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했다. 양심적병역거부 운동단체로서 우리는 '위민 인 블랙'이 베오그라드 중심가에서 정기적으로 벌인 거리집회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여러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대개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전쟁기간에 발생한 참사를 추도하고 전쟁범죄자들의 책임을 규탄하는 집회였거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콜롬비아와 같은 세계 전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지하는 성격의 집회였다. 국제 양심적병역거부의 날인 5월 15일과 국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차별주의 반대의 날인 11월 9일, 파시즘 패배의 날인 5월 9일,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등 여러 의미 있는 날에도 행동을 같이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강한 국수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활동방식은 '일반시민과 연대'하는데 있어서 최선책이었다. 5월 15일 오전에 우리는 '무기가 아닌 식량'이라는 집회를 조직해서 오후에 중심가에서 시위를 했고 밤에는 락콘서트를 벌였다.

양심적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는 NGO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몇 회에 걸쳐 세미나와 연수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MOC-Spain, Connection e.V, 반전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사무소(EBCO)와 같은 국제 양심적병역거부 운동단체와 평화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다.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위민 인 블랙'은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했고(지역언론이 국제적 언론보다 훨씬 우호적이다.), 간간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레스코바크 도시의 경우,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 지원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우리는 평화캠프와 기자간담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군대변인은 우리의 행동을 '유고슬라비아군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자간담회는 여성센터에서 열렸다.

4)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지원

YUCOM(인권변호사 위원회)와 인도주의 법 재단과 같은 인권단체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직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징집대상자에게는 세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 a) 비전투분야나 군사-경제기관 복무
- b) 한시적 또는 영구 면제판정을 받기 위해 병역 부적합 판정 시도
- c) 동원령 거부 후 징역형 선고

선택사항a)의 경우, 군사-경제 기관에서 13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양심적 병역거

부자에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서를 요구한다. 유니폼은 없지만, 역시 일종의 병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군대를 위한 봉사다.

선택사항b)의 경우, 의료위원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가 '병영생활에 적응이 힘들다' 또는 '일시적 신경과민증세'와 같은 이유로 '병역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병영 밖에서는 건강하지만 병영 내에 있게 되면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며, 지난 2년 간 특히 두드러졌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종의 비정상적으로 비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인권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사항c)의 경우, 징집대상자가 동원소집령을 거부하게 되면 재판관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대개 징집거부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다. 해당 지역 군재판소에서 재판관을 받은 후 1~2개월 내에 다시 동원령이 발부된다. 당연히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새로운 소집명령을 받게 되고, '공식적으로' 집행유예의 조건을 파기하게 된다. 두 번째 재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첫 재판에서 선고 받은 4~6개월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병역법을 두 번 어긴' 죄목이 추가된다. 이들 중 일부는 동원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감옥에서 4년을 보낸다. 현재 12명의 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재판 중이거나 감옥에 있다.

우리가 병역법을 어기거나 소집령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병역거부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모든 법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판관을 받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순수 민간단체 복무 허가를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명 있었다. 하지만 결국 군사-경제 단체로 보내졌다. 이 사람은 모든 명령을 거부했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는 출옥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났다. 아직도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세르비아의 군사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세르비아 정교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군대는 밀접한 유대관계는 맺고 있다. 우익 종교 청년 단체들은 군대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여러 소수 종교단체들을 악마숭배주의와 비교하며 활동을 막고 있다('약물, 알코올, 종파 반대 재단'이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세르비아 정교와 군은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종파적 산물이며 '세르비아군대의 진정한 정교 기사도정신'에 반한다고 선전한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군대변인은 최근 '사탄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란 책을 발간했으며, 여기에서 앞서 말한 정교와 군

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군대 및 전쟁범죄와 정치범과 관련된 준군사단체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세르비아의 국익을 전쟁 기간 동안 지켜냈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을 전범보다는 영웅으로 여긴다. 이들 중 몇몇 단체는 거의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때때로 1천구가 넘는 시신이 군병영이나 경찰서 근처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범인과 살해장소, 그리고 시신을 군사영토 내에 묻으라고 지시 내린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전망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의 새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군법 재판소는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민간단체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사경제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사경제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라는 전제하에 비전투 분야의 복무와 대체복무제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소집령이 발부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점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변론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우리의 활동사항을 인식함에 따라 군대 역시 자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대 입장에서선 대체복무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징병제도 폐지로 향한 첫 단계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징병제도의 폐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캠페인 계획의 준비와 실행이라는 기초 아래 2003년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전략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는 학생단체 및 일부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EBCO가 구성한 프로젝트인 '전 유고슬라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전개를 위한 전략계획'을 통해 우리의 캠페인과 노력을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의 캠페인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면 지금보다 용이하게 유럽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국내보다는 국외의 압력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 압력을 적절하게 결합시킨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법은 대체복무제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군재판에 대해서도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 지역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다. 바로 여기가 모든 사회적 문제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새롭고, 좀 더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12년 동안의 겪은 전쟁의 성격과 고국을 떠나는 대신 참전거

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 병역의무가 아직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중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국을 떠난다. 가부장제와 군국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종교적 거부자와 각 종교단체들에 대한 이해증가를 도울 것이며 사회전반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유호근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화의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유호근입니다.

대학시절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통하여 1950년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게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길진 않지만 제 20대가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가득 차있음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도로 군사화 된 나라입니다. 남과 북을 합쳐 200만에 가까운 현역군인들이 대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200만 -남한 69만, 북한 105만~117만- 에 가까운 현역병력¹³⁾에 예비병력만 1000만 -남한304만¹⁴⁾, 여명, 북한 748만 여명¹⁵⁾ 등- 이 넘는 등 한반도 남성의 3명중 1명 가량이 군인(혹은 예비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도를 가진 나라들의 병력과 비교하면 10배에 가까운 수치이며(일본 24만, 영국 22만, 독일 22만, 프랑스 29만, 이스라엘 17만 등) 세계최강대국이라는 미국(140만)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군사화 되어있는 사회적 현실은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명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군인정서가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군사화 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영화 된 사회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으로 치부되어 왔고,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러하듯 ‘국군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분단보다는 통일을 우선시하는 가치관과 신념이 내 안에 자리잡아가면서 현실과 신념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성은 군대를 가야만 하는 현실’과 ‘동포에게-더 나아가 인간에게- 충을 겨눌 수 없다는 신념’간의 충돌은 심히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고민 끝에 신념의 길을 선택하고 병역거부자의 길로 들어서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한국사회에 1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을 살았으며 이들 중에는 징역거부라는 동일사안으로 3차례에 걸쳐 10년을 복역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1400여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13) The Military Balance 2001 • 2002(2001.10월)

14)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5)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요원 포함

저 역시 구속 수감되었다가 현행 병역법이 위헌소송이 청구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고 보석으로 출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보내졌음에도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으며 단지 경멸하고 심지어 그들을 '사회로부터 이탈된 사람들' 정도로 치부해 왔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총을 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해온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로 동일한 위치에 세워진 지금 저는 과거 가해자에서 현재 피해자로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깊은 성찰의 과정이 필요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변화된 상황과 의의

2001년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그동안 묻혀져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병역거부자들에게 맞춰진 초점은 '양심'과 '인권'의 문제보다는 '동정'과 '연민'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 이후 병역거부가 특정종교만의 문제가 아님이 상기되며 '병역거부'와 '양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2년 저를 포함한 비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군사독재를 경험하며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해왔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거나 수십 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장기수감 해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에서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양심'은 선함과 착함 정도로 '축소정의'되었으며 법을 잘 지키는 것 정도가 양심으로 치부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편 개념적 편향은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진보의 영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등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수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수감 이유가 '비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조건들 속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쓰이며 타인의 양심에 관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에만 주목한 이중성이 존재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용, '톨레랑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평화와 인권의 본연의 가치의 회복에 기여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서의 길었던 군사독재는 저항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평화와 인권의 문제를 특정 이슈의 하위개념으로 상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편으로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저항폭력에 관대한 의식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합리화와 사고와 실천의 모순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폭력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비교적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 상황으로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평화와 인권을 우선에 놓는 가치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른 이슈와 특정사안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고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을 가장 우선에 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억압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며 고통을 받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일상의 폭력, 일상 속의 파시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한국사회는 폭력에 관대하고 심지어 무기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의 억압의 문화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를 확대하는 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비군사화'화를 통한 합리적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만 하는 현실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사회를 군대처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상명하달, 권위주의, 구타 등의 만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및 조직의 운영보다는 보스 중심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일반화 시켜왔습니다. 역으로 이는 군사독재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군사화 된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남한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의 20-30%를 국방비로 지출해 왔으며 북한은 경제력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이 더욱 심각합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를 정상화시킴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분배구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내 비민주적 구조의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국방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군대개선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군대는 구타, 의문사, 노동력의 낭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의 등장과 더 나아가 대체복무의 도입은 - 군사력의 강화와는 별개로 - 군대내 인권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문제는 사회에 제기된 지 3년이 채 안되지만 매우 넓고 깊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5%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조사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징병의 당사자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의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

3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 역시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라크전 반대 가두 캠페인, 학습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름에 대한 관용, 다르지 않음에 대한 자각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 전체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경험이 부족했던 이유와 군대 생활에서 겪었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에 대한 보상심리 등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다수가 소수에게 견지해야 할 입장임과 동시에 소수 역시 다수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더 나아가 다르지 않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세상에 나만이 가장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다른 나'로 바라보면 세상에는 온통 나밖에 없으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립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진지한 모습과 목소리들의 진정성을 구현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들의 신념이 진실 되고, 그 실천이 정당하며, 발걸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기에 머지 않은 장래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새시대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와 인권을 향해 전진합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안드레아스 스펙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며, 확실한 것은 징병제도 혹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징집 못지 않게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첼 브렛(Rachel Brett)이 내일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예정이고, 저 자신 또한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이곳 서울에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반전 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던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18조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지만 말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 15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재 이 나라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 20년 전인 1983년, 제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서유럽에는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또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독일 군대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군사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새로이 불붙기 시작한 동서 군비경쟁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병역을 거부한 후에도 여전히 '병역거부사안 심사위원회'에 출두해,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옹호했어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는 저의 신청서를 기각한 심사위원회 앞에서 말입니다¹⁶⁾. 오로지 이렇게 호소를

16) [역자주] 독일의 병역거부사안 심사위원회는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병역거부 신청이 양심적 결정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는 경우에 신청자를 병역거부자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그러

하고 있는 동안에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사주의와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군대와 대체복무 두가지 모두를 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결심했던 완전거부(Total Objection)를 징병제도와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행위로 바라보았으며, 독일 군대 - 혹은 어느 나라의 군대¹⁷⁾이건 - 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징병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의 문제였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게으른 꿈과 싸우거나 평화주의에 대해 단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행동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이들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의무인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부도덕성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낱아빠지고 야만스러운 관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 그리고 노예의 족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시도된 바 있으며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복무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커다란 개인적 희생과 고난이 따를 지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전쟁과 관련한 모든 복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¹⁸⁾

1970년대 초, 당시 반전 인터내셔널의 평의회 멤버였던, 피에트로 핀나(Pietro Pinna)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초점은 반군사주의적 행동에 맞추어져 있다. 그 신념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경험들은 논쟁과 대중적 결집의 중심적 축으로 기능한다. 좀 더 포괄적인 혁명적 전략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근본적인 지향점을 제시한다. 즉 그것은 책임감,

나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서류로부터 양심적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 청문을 개최한다.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청문을 거쳐야 한다

17) Andreas Speck: Sich fügen heisst lügen. Die Geschichte einer totalen Kriegsdienstverweigerung. *Schriften der Erich Mühsam Gesellschaft*. Heft 10. Lübeck: Erich-Mühsam-Gesellschaft 1995.

18) Albert Einstein, *The War Resister* No XXVIII, spring 1931, page 2

자율 그리고 개인의 자발성과 같은 것들이며, 이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을 사회적 삶의 다른 부분들로 확장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¹⁹⁾

한 마디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반군사주의적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개인의 행위이며, 이는 집단의 일부로서 개인이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무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인권적 접근은 이 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탈군사주의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는 적절한 곳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멀리 내다 보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인권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분적 성공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1921년 반전인터내셔널이 설립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덴마크와 스웨덴 단 두 나라에 불과했지만, 곧이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반전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1998년 세계 징집 조사’에는 177개 나라들의 징집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96개 나라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참고). 이들 중 중 30개 국가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고) 비록 이런 상황이 1921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 또한 많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66개 나라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19) Pietro Pinna: Functions and policy of WRI. *War Resistance* Vol 3, 1st & 2nd quarters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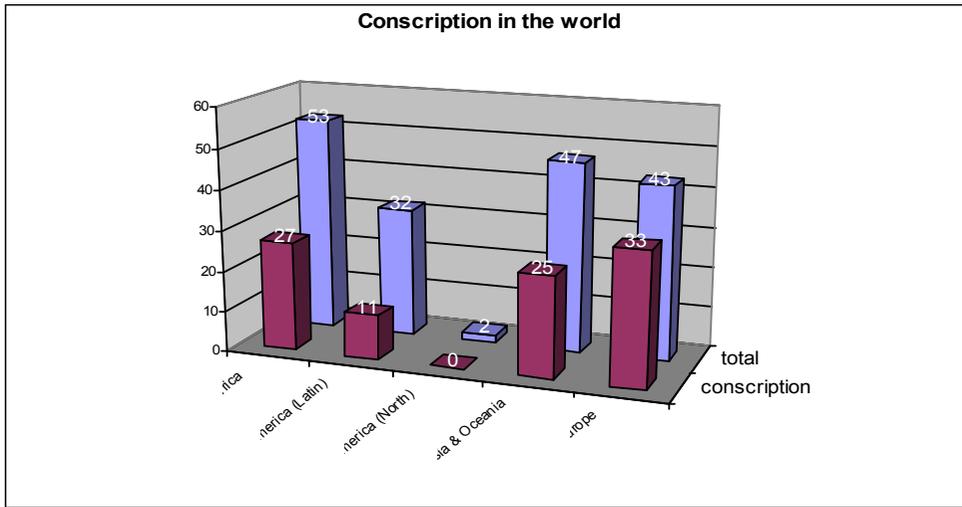


그림 20 세계의 징병제도 현황 출처 WRI 1998 world survey, 2003년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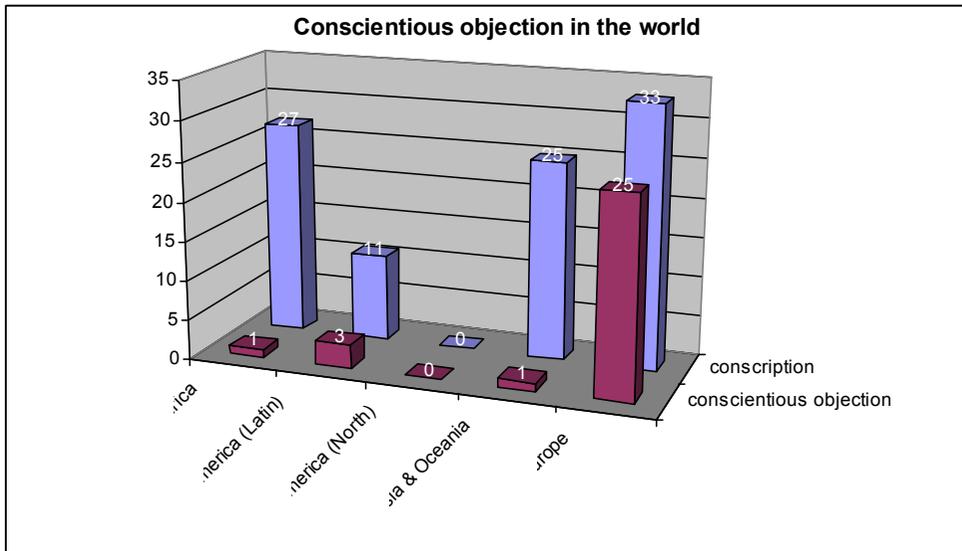


그림 2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출처 WRI 1998 world survey, 2003년 업데이트

우리는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유럽권의 상황은 매우 나빠 보입니다. 위의 통계는 소위 지원병제 혹은 직업군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가 포함될 경우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원병 혹은 직업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단지 몇나라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²⁰⁾

20) Bart Horeman & Mark Stolwijk: Refusing to bear arms. A world survey of conscription and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다른 측면들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혹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 은 어떻습니까? 저는 굳이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사주의자들의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최근의 걸프전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예 일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

불행하게도, 대체복무는 종종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연스런 귀결로 이해됩니다. 저는 지금 “불행하게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는 명백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안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을 혼동하는 것이며, 또 어느 정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또한 함께 이야기합니다. 유엔 역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²¹⁾

간단히 말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의 뜻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하게 됩니다²²⁾ 그러나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됨에 따른 결과일 수 있는 것이지요.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London, 1998. Some country information was updated.(부분 국역, 『월간 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21)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45 등 참고하라. 유엔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예를 들어, 유럽의회,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22)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최초의 법률에 이미 대체복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는 1917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으며, 스웨덴 또한 1920년 5월 12에 관련법을 시행한바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병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들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통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또한 거부해왔다. Wilfred Wellock: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Bulletin No II*, November 1923, page 2-4 참고.

반전인터내셔널은 평화 양심수 명단*(Prisoners for Peace Honour Roll)에 대체복무를 수행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에만 이들을 평화 양심수 명단에서 누락되시킨 바 있다. Bart Horeman: History of the Prisoners for Peace list, *The Broken Rifle* No 53, November 2001, page 8. Bernard Withers: The Case for Absolutism. *The War Resister* No 68, June 1955, page 3-722)도 참고할 것.

*[역자주] 반전 인터내셔널은 1956년부터 12월1일을 평화 양심수의 날 (Prisoners for Peace Day)로 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해마다 이날에 맞춰 반전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평화 양심수의 명단을 발표한다. 초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명단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최근에는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구속된 평화운동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작년부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이 명단에 수록되고 있다.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은 아마 조직화된 병역거부 운동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룹은 엄격하게 대체 복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그룹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925년 호데스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반전인터내셔널은 결의안을 통해 대체 복무제도가 안고 있는 두가지 딜레마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회의는 가입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견해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대체 복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서는, 대체 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전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국가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전시에 수행되는 대체 복무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수행되는 모든 대체 복무는 전쟁체계의 일부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²³⁾

1967년에 열린 반전인터내셔널 평의회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은 군사적 혹은 민간 목적의 모든 징집과 징발을 거부하며 이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반전인터내셔널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징병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징병에 대한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에서 대체 복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지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대체복무는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기관의 지원 하에서 국제적 봉사 및 평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²⁴⁾

반전인터내셔널은 민간대체복무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에게 자국 시민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

23) 대체복무에 대한 반전인터내셔널의 입장에 대해서는 The W.R.I. view of alternative services. *The War Resister* No XIII, July 1926, page 4.참고. 같은 호에 당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던 대체복무법안에 대한 개요가 실려있다.

24) War Resistance Vol 2, 3rd quarter 1967, No 22, page 5 참고/

2. 대체복무의 내용이 오로지 민간성격의 것²⁵⁾이라 할지라도 전시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반전인터내셔널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이 군사적 성격과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모두를 완전히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어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투옥되는 상황보다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상황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확실히 반전인터내셔널이 조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룹의 활동기반이 유럽이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의 결과일 수 있겠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조직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되었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부터 서서히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우 작은 수의 그룹들만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조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매우 새로운 개념입니다. 물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왔던 사람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있었고, 현재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의 대부분도 바로 이들입니다. 이 나라에도 약 1500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운동을 조직해 보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 운동 없이 변화란 거의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 대부분에서 인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프리카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 정도만이 징집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징집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여전히 군대를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신병을 모집할 지 모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전쟁을 겪었으며 아직까지 전쟁중이거나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고문을 당하거나 장기간의 투옥 혹은 심지어는 즉결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징집원들을 피하기 위한 다른 여러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위한 한가지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25) 이와 관련해 독일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전쟁시,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컨대 병원, 민방위, 지뢰제거, 난민통제와 같은 대체복무에 무기한 소집할 수 있다. 독일 연방민간복무청장은 1980년대에 이를 분명히 명시했다. .

시민사회의 존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종 양심적 병역거부는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어 집니다. 이것 역시 왜 조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유럽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훨씬 약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I: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우리, 반전인터내셔널은 인간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같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도록 만들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된 것은 올해 1월말 영국 외무부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영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영국 외무부 대표는 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일반적으로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처음에 제시한 통계 자료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953년 그때 당시 반전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이었던 해롤드 빙(Harold Bing)은 인권적 차원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어떠한 국제 협정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만족스러운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현재에도 개인 또는 민간기구들이 여지껏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왔던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²⁶⁾." 그래서 반전인터내셔널은 그 당시 논의되고 있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²⁷⁾ 1968년 반전인터내셔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40,000명 이상의 서명자를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1970년 1월 30일 유엔에 전달되었으며 "유엔 도지²⁸⁾"라 불리는 문서저장고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그때 보낸 서명서와 호소문들이 아직까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여전히 국제 규약 혹은 추가의정서에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어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26) Harold F. Bing: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The War Resister* No 63, autumn 1953, page 9-15

2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1966년 12월 23일에 채택되었으며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 규약이 발효된 시점은 이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76년 3월 23일이다.

28) Eileen Egan: Conscientious objection stalled in Human Rights Commission. *War Resistance* Vol 3, 3rd quarter, 1973

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습니다. 최근 2002년에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45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 하고 있습니다.²⁹⁾ 이들 결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 이는 이미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 또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징집과정중의 어떤 특별한 시점에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청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에게 제공되어야 함.-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요청이 없을 때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 및 복무조건과 관련한 차별의 금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혹은 좋게 말해서 매우 문제가 많은 몇 가지 규범들 또한 결의안들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들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은 “구체적인 상황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공명정대할지라도 어떤 기관이 누군가의 양심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항상 매우 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은 엄격한 심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항상 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다만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대체복무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는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를 의미하는 징병제도로 부터 파생된, 이 의무를 관철시키는 또 다른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9) 유엔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결의안들은 1998년 77호 결의안, 2000년 34호 결의안, 2002년 45호 결의안이다.

물론 유엔 수준의 결의안들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의 전체 시스템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아무런 강제적 시행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제 인권법을 무시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 때에는 어느 정도로 더 많은 결의안들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의 친구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유엔 결의안들은 우리들의 정치적 투쟁에 있어서 만큼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더러 종교 분파나 급진주의자들의 미친 무리라고 비난하는 정부 대표자들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급진주의자 - 저는 확실히 급진적인 평화주의자이며 비폭력적 무정부주의자이며 반군사주의자입니다.-라고 불리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만 유엔을 활용해 우리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 또한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을 강조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범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조차 거의 충족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가 첫 징집 영장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의 없는 일이죠. 유엔인권위원회의 1998년 77호 결의안을 근거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 시스템과 함께 해야만 하는 동안 - 반전인터내셔널은 종종 제네바 퀘이커 유엔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인권 담론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유엔이 가끔씩 유용한 도구이며 가끔은 보호장치라고 보아야 하지만 결코 그들의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과제 II: 양심적 병역거부와 반전

세계 중요한 것은 풀뿌리 차원의 대응,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반전 사이의 연관이라는 문제입니다. 1967년 반전인터내셔널 평화회와 집행부 멤버이자 "반전인터내셔널 1968년 세계 징집 조사"³⁰⁾의 공동 저자인 토니 스마이테(Tony Smythe)는 "비록 반전인터내셔널의 중심 목표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오늘 날³¹⁾의 반전 투쟁과 크게 무관합니다."라는 자극적인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성과들을 묘사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 Devi Prasad and Tony Smythe (ed): Conscription. A world survey.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resistance to it. War Resisters' International, London, 1968

31) Tony Smy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War Resistance* Vol 2, 2nd quarter, 1967, No 21, page 17-22

"비록 성과들의 목록은 늘어났지만,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목하는 목표들, 예컨대, 징병제도의 소멸, 전쟁에 대한 대중적 저항,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변혁과 같은 목표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입안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토니 스마이테의 말을 다시 살펴보건대, 과연 우리는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목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분명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피에르토 핀나로 돌아가보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초점은 반군사주의적 행동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논쟁과 대중적 결집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위해 싸울 때조차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한가지 명확한 목표는 징병제도 혹은 모든 형태의 강제징집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스페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채택한 접근방법이었습니다³²⁾ 하지만 이 운동의 결과는 불가피하게도 직업적 군대였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경우 반군사주의 운동이 스페인 군대가 충분한 숫자의 자원자를 모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근래에도 여전히, 징병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종종 군현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³³⁾ 단지 그들만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징병제 폐지만 가지고서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징병제 폐지가 군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또 한 걸음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일부로 만들고 다른 반전 단체들과 연대를 건설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상으

32) Rafa Ajangiz: Civil disobedience gets rid of conscription (Spain, 1985-2000).

33) 헝가리에 있는 반전인터넷서널의 유관단체 알바 코어(Alba Kör)는 현재 헝가리 징병제반대연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두고 어려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헝가리 징병제반대연맹은 반군사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헝가리 군대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헝가리 군현대화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놓고 있다. 확실히 성공(?)은 있는 듯이 보인다. 2003년 2월 14일 헝가리 정부는 2005년까지 징병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Farkas Henrik: Email 18 February 2003)

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해 인권 단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혹은 반전인터내셔널로서 우리는 인권적 접근과 전쟁에 반대하는 반군사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장은 인권에 관한 것이 라기 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변화란 군사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리고 협동과 비폭력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지금과 같은 시기, 다시 말해 여전히 헤게모니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793년 프랑스가 징병제도를 채택한 이래, 반드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발칸 전쟁때의 상황만을 살펴보다라도 많은 병역기피자들과 탈영병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같은 사람들의 통계는 전체의 50%를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과 국제사면위원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999년 나토의 유고공습 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 약 15,000여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하거나 탈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 발견하는 것조차 매우 힘이 든 상황입니다.

터키의 경우, 현재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은 약 5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는 400,0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군부는 예비군들이 동원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매년 30,000명³⁴⁾의 남성과 여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2년에는 2,600명이 그리고 2001년에는 1,500명이, 즉 2년 동안 4,100에 이르는 사람들이 탈영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³⁵⁾.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반전인터내셔널 이스라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규모는 약 180명 앞에서 든 예보다 훨씬 긴 기간임에도 상대적으로 그 숫자는 적습니다³⁶⁾.

러시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니치니 노프고로드시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보다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매년 3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입영통지서를 무시하고 징병절차³⁷⁾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

34) Sergeiy Sandler: Statistics. Email 10 November 2002

35) Conal Urquhart: Israeli army desertions rise. The Guardian, 19 November 2002)

36) War Resisters'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Israel: an unrecognised human right. Report for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relation to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London, 3 February 2003

37) Conal Urquhart: Israeli army desertions rise. The Guardian, 19 November 2002

황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전인터내셔널과 국제사면위원회가 다뤘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안도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³⁸⁾.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무엇일까요? 35년전 토니 스마이테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에 저항하는데 있어 별반 상관이 없는 것"³⁹⁾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인 세르게이 샌들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자면, 그 규모라는 차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변적인 집단일 수 밖에는 없겠지만,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서 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행동은 군대와 관련된 그럴듯한 동의(공적기관으로서 군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행동이거나 이스라엘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적 정책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은, 군대 및 정부의 장성들이 내리는 결정에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⁴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바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르게이 샌들러를 인용하자면, 그들이 "메시지를 크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회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군대에서 이탈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되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 나아가 대부분의 군대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군대는 어느 정도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는 병역기피라는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군대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혹은 공개적으로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현재 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욱 강하게 억압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차후의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d이를 전제로 하여 다음 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38) Human Rights Watch: Conscription through detention in Russias Armed Forces, New York, November 2002

39) Tony Smy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War Resistance* Vol 2, 2nd quarter, No 21, page 17-22

40) Sergeiy Sandler: Delivering the message, loud and clear. *The Broken Rifle* No 53, November 2001,

과제 III: 정치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운동 조직하기

운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항상 힘이 든 일입니다. 미국의 운동가인 빌 모이어는 어떠한 사회 운동이건 그 주요한 임무는 “가슴(공감)과 이성(여론) 그리고 다수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권력자와 투쟁하는 것” 에 있다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⁴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의 집단적 운동으로서 우리 자신의 힘을 건설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역능을 배양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아직 집단적 운동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다만 소규모 그룹들과 개인들만 관여하고 있는 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선언하는 사람들은 투옥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의 역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지그룹들, 상담, 그리고 민주적인 혹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비폭력 훈련 - 더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하는 훈련까지 포함해서 -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⁴²⁾ 또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추구하며 군대의 지배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에는 상당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사람들이 감옥으로 투옥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과정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토니 스마이트는 제1차 세계 대전시기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영국인들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6,242명 중에서 4,000명은 형법에 따라 감옥 바깥에서 노동을 했으며 1,500명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이 중 900명은 2년 이상을 선고 받았으며 10명이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 중 31명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34명은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하지만 뒤에 수상직권으로 형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의 소름끼치는 여건으로 인해 그들의 남은 여생을 장애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⁴³⁾" 물론 감옥살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우리가 그것을 고무했다는 이유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정신병자가 되고, 혹은 여생을 장애로 고통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또한 원하지

41) Bill Moyer: Movement Action Plan. A Strategical Framework Describing the Eight Stages of Successful Social Movements. Social Movement Empowerment Project, San Francisco, 1987

42) Julia Kraft and Andreas Speck. Nonviolence and Social Empowerment. London/Oldenburger, 2000,

43) Tony Smy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War Resistance* Vol 2, 2nd quarter, No 21, page 17-22

않습니다.

독일에서 완전거부를 행했던 저의 경험덕분에, 저는 누군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되고자 할 때, 그런 생각을 거스르면서 조언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나 순교자를 필요로 하거나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며, 역능을 배양해 가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힘있는 운동을 원합니다. 물론 지원단체들과 국제적 연대가 감옥에서의 삶을 안전하고 좀더 어렵지 않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감옥에서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옥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직 감옥에서의 삶을 이겨낼 만한 의지를 갖추지 못한 우리 -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상담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군복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혹은 준법적인 방도들에 대해 조언하는 것 또한 우리의 투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소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우 치욕적이며 힘을 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러한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지원과 상담이 도움을 주고 있는 한, 분명 다른 사람들은 더 적합한 방식으로 군복무를 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체제와 대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말로 곡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운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지지그룹들이 운동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한명에 불과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느때건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입니다.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전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징병대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공감)과 이성(여론)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어마 어마한 과제이며, 오늘 오후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건설해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을 마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새로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운동이 성취하고자하는 것을 결정하며 이 운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의가 운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인권적 접근과 전쟁에 저항하는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다면 꽤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지금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토론에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제임스 라일리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흥미로운 회의,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슈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기연씨와 최정민씨를 비롯해 이번 행사를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모든 회의 조직자분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개의 이어지는 논점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기초발제를 한 후, 이후의 그룹토론을 위해 플로어에 발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를 비롯해 회의기간 내내 유용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이라는 두 주제를 최근에 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발제를 진행 해보려 합니다. 제가 제안할 논점들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개념들, 운동의 동학, 전략, 그리고 전술이 그것입니다.

개념

“모든 백성들의 의무는 왕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백성의 영혼은 그 자신의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5

시민적 의무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정부 형태가 들어선 이래 계속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에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거부의의 근거(세속적 혹은 종교적)에 따라, 거부의의 범위에 따라(모든 전쟁에 반대하는지, 특별한 분쟁에 대해 반대하는지, 또는 단지 특별한 무기만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복무에 대한 의지(모든 의무를 거부할 것인지, 시민으로서 의무는 수행할 것인지, 군대에서 비전투 분야에 복무할 것인지)에 따라.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이러한 유형들을 모두 채택해야 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포괄할 수 있는 경계입니까? 근본적으로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누구이며, 누가 그 그것을 결정합니까?

2) 한국에서 시민권에 대한 많은 기본적인 관념들은 군복무라는 전통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운동을 건설하고 대중적 지지와 이해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봉사, 애국심, 그리고 국가안보의 보증이라는 논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어떠한 논리로 답할 수 있습니까?

3) 지난 10 년 동안,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또한 인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더욱 완성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지형은 새로운 동맹들을 확보함에 있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최근의 성공사례와 실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동 정책들

1) 사회 운동들은 내적인 단결을 유지하는 것과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는 것 사이에 서 어떻게 균형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항상 대면하기 마련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있어 우선적으로 평화운동과 종교단체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놓여있는 격차를 좁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과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진보적 기독교 그룹들과 어떻게 연관을 맺어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도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

1) 언제, 또 어떻게 정책적인 타협을 타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체복무기간이나 복무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정부와 NGO들 사이의 적절한 협조 등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타협이 필요할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운동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함에 있어 이런 타협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야기할 까요?

2)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남한의 대북정책이라는 사안에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고, 또 연관시켜야 합니까? 두 이슈, 즉 국가 안보 정책과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연결짓는 것은 유리하고 적절한 것입니까

전술들

1) 아직 대부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룹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연대세력입니까? 병역으로부터 고통 받는 개인들의 가족들은 이점과 관련해 어떻습니까?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군복무 이전, 군복무기간 동안에, 그리고 복무를 마친 잠재적 병역거부자들과 교통함에 있어 상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3)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집중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법안통과를 위한 효과적인 전술들은 무엇이며, 국제적인 조직들과 국제적 압력은 어떻게 이 운동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역사

레이첼 브렛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길고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이커는 살인하는 행위나 살인을 혼란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믿으며 300년이 넘도록 참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퀘이커가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화주의 신념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퀘이커는 이로 인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체할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퀘이커는 제네바와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유엔의 강력한 후원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퀘이커는 조정, 협상,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포함,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퀘이커는 또 참전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감소시키는 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정부는 퀘이커이자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이를 국방부 차관(Deputy Minister of Defence)에 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정부가 국방의 의미가 곧 군사력의 사용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평화주의자들은 자국에 깊이 헌신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복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민간복무제(civilian service)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복무제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요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규범들

양심적 병역거부는 수십 년 동안 몇몇 나라들에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하여 국제법상에서 병역거부권이 승인된 것은 좀더 최근의 일입니다. 이 권리는 국제적 혹은 종교적 인권조약 그 어디에도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9년 유엔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⁴⁴⁾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의해 1993년부터 병역거부권이 동 규약에서 도출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습니다.⁴⁵⁾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국가적 비상시거나 할지라도 절대적이고 훼손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⁴⁶⁾ 비록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지만, 개인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권리가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은 “오직 범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중보건, 미풍양속 또는 기본권과 타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 일 뿐이며⁴⁷⁾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인권 규정들과는 달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인 병역거부권은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확장되어 왔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종교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유신론, 무신론, 무신론적 신앙을 포함한 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또 병역거부의 양심을 오직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명백히 하였습니다.⁴⁸⁾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적 혹은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확고한 신념을 포함하여 양심의 원칙과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⁴⁹⁾

44) UN 인권위 1989/59 결의. 1993/84, 1995/83, 1998/77, 2000/34 그리고 2002/45의 잇따른 결의에서 보장되고 발전되었다.

45) 인권이사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2(48)호는 동 규약 하의 국가보고에 대한 후속 질문들과 동 규약 제1선택의정서(Fist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하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고려를 통해 이를 계승·발전시켰다. 어떠한 종교적 인권재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회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권고 8(1987)호에서는 의회 회원국들에게 “양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2000년 12월 선포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10(2)조를 통해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권에 포함된 권리로 이를 명시하였다. 유사하게 미주인권위원회(Inter0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 국가들의 법 체도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를 초청했다(7장-미주인권위원회 권고, 1997년 연례보고서, 제98차 회의).

46)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1항.

4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3항.

48)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2001년 11월 12일 CCPR/CO/73/UKR, 20항)와 카자흐스탄(2000년 7월 24일 CCPR/CO/67/KGZ, 189항)에 관한 인권이사회 최종 소견을 보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무력의 사용이 어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정당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부분적 병역거부)”도 포함합니다.⁵⁰⁾ 단지 전쟁의 개념적인 면에서 예를 들자면 “선택적” 또는 “부분적” 병역거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논평 22호가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양심의 자유 및 개인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심각하게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⁵¹⁾,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만 병역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특별히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효성

양심적 병역거부가 승인된 국가에서도 이 승인은 실질적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인 것입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반드시 법조문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법은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그 법의 유용성과 활용방법은 관련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3. 신병모집 절차에서 병역거부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병역거부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가와 같은 절차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5. 병역거부 인정의 근거가 국제법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6. 병역거부는 신병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예비역도 가능해야 한다. 징병제(강제적 혹은 의무적 군복무) 하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점이 종종 제기되기도 하지만, 심지어 군입대의 최초 결정이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적 군복무가 처음 수용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⁵²⁾
7. 대체복무의 종류, 조건 그리고 기간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⁵³⁾ 그리고

49)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77호 결의안. 동시에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는 어떤 종교나 신앙에도 귀속되지 않을 권리 뿐 아니라 유신론, 무신론 그리고 무신론적 신앙들도 보장하고 있다. 신앙 혹은 종교의 의미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2절)고 명백히 하고 있다.

50) 유엔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by Eide and Mubanga-Chipoya (뉴욕, 1983)

51) 11절

52)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77호 결의안은 “군복무 중인 사람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병역거부의 제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종교 혹은 신앙 선택의 자유를 명백하게 승인했다.

53)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77호 결의안 4항, “강제적 병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별다른 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않은 각 국은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비무장복무 혹은 민간적이며 징벌적이지 않는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8. 대체복무 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차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⁵⁴⁾

대체복무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의 사유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기의 사용만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비무장 복무, 모든 군사력의 사용,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민간행정국하의 민간복무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⁵⁵⁾ 모든 병역거부자들이 항상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거부자들 혹은 그들의 일부는 군복무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복무의 종류, 기간 등이 처벌적인 대체복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비교적 긴 기간”⁵⁶⁾ 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기간의 차이는 오직 그것이 “특별 봉사로 고려되는 것이나 그 대체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는 기간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할 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⁵⁷⁾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사람의 병역거부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에 닳쳤을 때, 예를 들어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군대와 대체복무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결해 왔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채택이 되었다면, 그것은 국내적 혹은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서 병역거부 행동이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정한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을” “독립적이고 공평한” 기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⁵⁸⁾

결론

국제적, 종교적, 국가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형벌(종종 반복되는 투옥)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나 원칙을 침해받고 있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합니다. 동참을 거부하며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54)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55) 예를 들어 유럽의회 각료위원회의 1987년 8호 권고를 보라.

56) 1987년 유럽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8호.

57) 인권이사회는 프랑스의 Foin사건, 청원(Communication) No. 666/1995 (CCPR/C/67/D)을 1999년 11월 3일 결정하였고, 비슷하게 프랑스의 Venier and Nicolas 사건, 청원 No. 690/1996, No. 91/1996, 그리고 프랑스의 Maille 사건 청원 No. 689/1996, 이들 모든 사건을 2000년 7월 10일 결정하였다.

58) 1998/77 UN 인권위원회 결의 3항.

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과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주장인 것입니다.

국제 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대체 복무제도의 시행⁵⁹⁾

루씨에 비에르스마

이 보고서의 목적은 (1)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들 내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논점에 관한 역사적 진전 상황을 보여주는 것; (2) 국제 연합에 의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위한 법적 기초를 다지는 것; (3)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관련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별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들이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특별 진행 기구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등으로 인권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1부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그리고 '총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2부는 인권이사회가 일반논평을 통한 법제와 권고를 포함하여 이 안전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제3부는 인권 위원회의 특별 절차 기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원칙에 반하는 정부의 관행과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기술한다.

1989년의 결의문에서 인권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를 인정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30년 이상 국제 연합의 의제에 올라와 있었다.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 제18조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 제18조에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확증한다: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의 신앙과 종교를 바꿀 자유, 혼자서든 혹은 공적이나 사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로든 가르치고, 실천하고, 숭배하고, 규칙을 지키는 일로써 그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ICCPR 제18조에 의하면,

59) 이 보고서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견해를 대표하지 아니함.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의 선택대로 신앙과 종교를 갖거나 수용할 자유, 개인이든 혹은 공적이나 사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로든 숭배하고, 규칙을 지키고, 실천하고, 가르침으로써 그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아무도 그의 선택에 따라 신앙과 종교를 갖거나 수용할 자유를 손상시키는 강요 아래 있지 않다.

3. 자신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는 법이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도덕이나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제한된다.

4. 규약 당사국은 부모 및 적용가능시 법적인 보호자가 그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교육할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명, 자유, 개인의 안전, 교육,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제1부 국제 연합 내에서의 역사적 진전들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 그 외의 실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년의 교육과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는 문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결의문과 일치하게, 1973년 사무 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⁶⁰⁾

1976년 2월 11일 결의문 1 A (XXX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했고, 다음 회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⁶⁰⁾ E/CN.4/1118와 Corr.1 와 Add.1-3.

1978년 12월 20일 결의문 33/165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주요 심의 기구인 총회는 모든 사람들이 흑인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경찰이나 군대의 복무를 거절할 권리를 인정하였고,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의 정신과 일치하게, 군이나 경찰에 복무함으로써 흑인차별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원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원국들이 망명이나 다른 국가로의 안전한 통과를 허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문은 국제 사회가 무력의 사용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가장 명확하게 승인한 것이었다.⁶¹⁾

이어서 1980년 3월 12일 결의문 38(XXXVI)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과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그 건에 관하여 전달할 만한 어떤 주석이라도 함께, 회원국들로부터 다시 한 번 입수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1981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⁶²⁾

1981년 3월 12일 결의문 40(XXXVII)에서 위원회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1978년 12월 20일의 총회 결의문 이행에 대해서 위원회에 권고할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1981년 9월 10일 결의문 14(XXXIV)에서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주요 보조 조직체인 소위원회는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다양한 범위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권을 하여 그들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간결한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1982년에 소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예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1982년 9월 10일 결의문 1982/30에서 소위원회는 전문가들에게 예비 보고서에서 수집한 언급에 기초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된 원칙들을 개발하도록 요청했다.

1983년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는 다양한 인권 문서들에 표현되는 관련 국제 용어와 표준을 반영하고, 군복무의 자발적 혹은 의무적 이행과 관련된 국가적 관행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했다.⁶³⁾ 그 연구는 특히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혹은 유사한 동기에서 유발한 깊은 신념의 양심적 이유로 무장 복무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을 권리를 회원국들이 법을 통해 인정하도록 총회가 권고하도록 요구했다.⁶⁴⁾ 대체 복무와 관련하여, 총회는 회원국들이 거부자들에게 적어도 군복무 기간만큼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될 정도로 너무 길지 않게 대체 복무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 봉사나 평화, 발전,

61) 양심적 병역 거부, Asbjorn Eide와 Chama Mubanga-Chipoya, 유엔 출판, 판매 번호 E.85.XIV.1, 68단락

62) E/CN.4/1419 와 Add. 1-5. 또한 E/CN.4/1509 참조.

63) 양심적 병역 거부, Asbjorn Eide와 Chama Mubanga-Chipoya, 유엔 출판, 판매 번호 E.85.XIV.1.

64) Ibid., para. 153 (1) (a).

국제적 이해를 위한 일을 포함하여 의미있는 내용의 대체 복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까지 노력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받았다.⁶⁵⁾

1984년 3월 12일 결의문 1984/33에서 위원회는 정부들, 관련 유엔 기구들과 특별 기관, 다른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논평을 받을 목적으로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이 작성한 보고서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1985년에 사무총장은 이 연구에 대한 정부, 유엔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의 논평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했다.⁶⁶⁾

1987년 3월 10일 결의문 1987/46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정하도록 회원국들에게 호소하고 이 권리를 실천하는 개인을 투옥시키지 말도록 권고했다.

의미심장하게도, 1989년 3월 8일 결의문 1989/59에서 인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 결의문은 또한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고 그런 조항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이 점과 관련한 몇몇 회원국들의 경험을 유념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그 사유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투옥시키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했다. 그 결의문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형태의 대체 복무제가 원칙적으로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띠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1991년 3월 6일 결의문 1991/65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1993년의 제49차 회기에서 그 건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청년의 역할'이라는 회의 안건 하에 제49차 회기에서 그 질문을 보다 깊이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에 위원회는 그 건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고려했다.⁶⁷⁾ 1993년 3월 10일 결의문 1993/84와 1995년 3월 8일 1995/83에서 위원회는 결의문 1989/59에 언급된 대로 모든 사람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재확인했고, 회원국들에게 대체 복무와 그 본질에 관한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켰다. 1993년과 1995년의 위원회의 결의문은 또한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표준을 확립하려는 위원회의 활동은 1998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1998년 4월 22일 결의문 1998/77에서 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65) Ibid, para. 153 (3).

66) E/CN.4/1985/25 and Add.1-4.

67) E/CN.4/1993/68 and Add. 1-3.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혹은 유사한 동기로부터 유발하는 깊은 신념을 포함하여, 양심상의 원칙과 사유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인식했다.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제14조를 상기시켰다.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와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가 있음에 주의를 끌었다.

몇몇 회원국들이 조사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 요구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였다.

그와 같은 제도가 없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 특정 경우에 순수하게 행해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임무를 가지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결정을 내리는 조직체를 구성하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특정 믿음의 본질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고 그런 조항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그 이유에 적합하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띠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징벌적인 성격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상기시켰다.

회원국들이 그 나라의 법과 관행에 있어서 복무 기간이나 복무 여건, 여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의 혹은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반복했다.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옥되거나 반복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무도 각 나라의 법과 형사상의 처벌 절차에 따라 이미 유죄 혹은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위반 사실 때문에 다시 처벌받거나 처벌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단락 5)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제시된 바에 따라, 망명자로 정의되는데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개개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적절한 법 조항이 없어서 군복무 수행을 거절한 데 따르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본국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망명을 허가할 것을 고려하도록 독려했다.

1998년 이후,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이미 확립된 표준을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의 결의문인 2000년 4월 20일 2000/34과 2002년 4월 23일 2002/45에서 위원회는 결의문 1998/77에 비추어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현재의 법령과 관행을 검

토하도록 요청했다. 두 결의문은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게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실천으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 형태의 복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실례의 분석과 기록물을 준비할 것, 그와 같은 자료들을 정부들, 국가 인권 기구, 특별 기관,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수집하고 이런 편집 내용과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격년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다음 보고서는 2004년의 제60차 회기에서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2부 규약 감시 기구

규약 감시 기구들 혹은 위원회들은 주요 유엔 인권 규약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규약 기구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나라들의 준수 여부는 인권이사회에 의해 감시된다. 인권이사회는 (1) 회원국측의 정기 보고서를 조사하여 주요 관심사를 요약하고 회원국측에 적절한 제안과 권고를 하는 결론적인 관찰을 채택한다 (2) 규약 하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사회 의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일반논평을 부연한다. 그리고 (3) 준수법적 자세로 개개인의 제소를 조사하고 견해를 채택한다.

a.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1993년 7월 30일, 인권이사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2를 채택하였다. 일반논평 22는 그 가운데서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가 제18조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반논평 22의 11항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많은 개인들이 제18조에서 언급하는 자유에서 기인하는 권리에 근거하여 군복무 수행을 거절(양심적 병역 거부)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그와 같은 주장에 답하여, 점점 많은 수의 회원국들이 그들의 법으로 순수하게 종교적 혹은 그 외 군복무를 금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시민들의 의무 군복무를 면제하고 국가적 대체 복무를 시행하였다. 규약은 명백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에 심각하게 상충되므로 이사회는 그와 같은 권리가 18조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권리가 법 혹은 실례에 의해 인정될 때, 특정 종교의 본질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간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복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차별도 없을 것이다. 이사회는 회원 당사국들에게 제18조에 명시된 권리에 근거하여 어떤 조건의 사람이 군복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 대체 복무 기간과 본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권했다.⁶⁸⁾

68) CCPR 일반논평 2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Art. 18): 30/07/93, para. 11

b.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이사회의 입장은 여러 해 동안 발전되어 왔다. 1985년부터의 초기 결정 중 한 가지에서 이사회는 핀란드 시민인 L.T.K의 청원을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L.T.K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의 신분이 핀란드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군복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형사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면서 ICCPR 제18조와 제19조를 위반한 핀란드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 규약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권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특별히 제8조의 3항(c)(ii)를 고려해도 규약의 제18조나 제19조 어느 것도 그런 권리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 자체가 규약의 어떤 조항을 위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자신이 법과 상반되는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⁶⁹⁾

일반논평 22을 채택한 데 뒤이어, 이사회는 제26조와 관련된 것으로 고려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몇몇 사건을 다루었다.⁷⁰⁾ 예를 들어, 1993년에 이사회는 Henrikus A.G.M. Brinkhof가 26조 위반의 희생자가 아님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는 단지 한 그룹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면제시키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면제시키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18조에 관한 이사회의 일반논평을 참조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회원국측에 의해 인정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의 특성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이사회는 당사자가 평화주의자로서의 그의 신념이 네덜란드에서의 대체 복무 제도와 양립하지 않는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허용된 특권적 대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의 그의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히지 않았음을 고려해서 Mr. Brinkhof가 규약의 26조의 희생자가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견은 정부 당국이 군복무와 대체 복무에 대해 똑같이 강경하게 거부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 당국이 이런 관점에서 어떤 차별이라도 없앨 목적으로 관련 규제와 관행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⁷¹⁾

1999년과 2000년 중에 이사회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여러 청원들을 검토했고 제26조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Frederic Foin 대 프랑스 사건에 대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규약 위반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8조에 의해 정부 당국은 군사적 성격의 봉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적이지 않다면 대체적인 국가 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는

69) Communication No. 185/1984, L.T.K. v. Finland, para. 5.2.

70) ICCPR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은 어떤 차별이라도 금지하며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혹은 사회적 근원,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보증한다

71) Communication No. 402/1990, Henrikus A.G.M. Brinkhof v. The Netherlands, para. 9.3 and 9.4.

프랑스 법령 하에서 군복무 12개월에 비해 국가적 대체 복무 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규약의 제26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제26조가 모든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사회가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법과 관행이 군복무와 국가적 대체 복무 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경우에 관련된 특정 복무이거나 그 복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긴 기간의 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제시된 이유는 그런 표준이나 혹은 당사자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 이사회는 관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현 사건이 관련된 규약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당사자가 그의 양심적 신념에 근거하여 차별당했기 때문에 제26조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⁷²⁾

Richard Maille 대 프랑스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규약 위반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8조에 의해 정부 당국은 군사적 성격의 봉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적이지 않다면 대체적인 국가 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는 프랑스 법령 하에서 군복무 12개월에 비해 국가적 대체 복무 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규약의 제26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제26조가 모든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사회가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법과 관행이 군복무와 국가적 대체 복무 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경우에 관련된 특정 복무이거나 그 복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긴 기간의 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제시된 이유는 그런 표준이나 혹은 당사자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 이사회는 관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현 사건이 관련된 규약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당사자가 그의 양심적 신념에 근거하여 차별당했기 때문에 제26조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⁷³⁾

72) Communication No. 666/1995, Frederic Foin v. France, para. 10.3.

73) Communication No. 689/1996, Richard Maille v. France, para. 10.4

Marc Venier and Paul Nicolas 대 프랑스 사건에 대해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규약 위반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8조에 의해 정부 당국은 군사적 성격의 봉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적이지 않다면 대체적인 국가 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는 프랑스 법령 하에서 군복무 12개월에 비해 국가적 대체 복무 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규약의 제26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제26조가 모든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사회가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법과 관행이 군복무와 국가적 대체 복무 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경우에 관련된 특정 복무이거나 그 복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긴 기간의 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제시된 이유는 그런 표준이나 혹은 당사자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 이사회는 관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현 사건이 관련된 규약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당사자가 그의 양심적 신념에 근거하여 차별당했기 때문에 제26조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⁷⁴⁾

1999년에 이사회는 제18조에 비추어 Westerman 대 네덜란드의 청원을 고려했지만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에 제기된 질문은 군복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사자의 경우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사회는 국가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조항들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면제되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들과 주장을 고려하였으며, 이 법적 조항들이 제18조의 마련과 조화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를 다루는 일반논평 22(48), 11항 참조. 이사회는 당사자가 '폭력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 강력한 양심적인 거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본다. (5항) 이 사건의 경우에 이사회가 정부 당국 대신 이 사건의 평가를 내려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⁷⁵⁾

74) Communication No. 691/96, Marc Venier and Paul Nicolas v. France, para. 10.4.

75) Communication No. 682/1996, Westerman v. The Netherlands, para. 9.5.

이사회는 여섯 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밝힌 이유들은 그의 거부 규약의 제18조에 의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합법적 표명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정부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투옥시키는 식으로 규약의 제18조에 근거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다.⁷⁶⁾라고 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했다.

이사회가 27조⁷⁷⁾에 비추어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들이 몇 건 더 있었다.⁷⁸⁾

c. 이사회는 최종 견해와 논평

이사회는 결론관찰과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좀 더 언급하였고 다양한 회원국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의 그루지야 공화국에 대한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군복무가 18개월인 것과 비교하여 비군사 대체 복무가 36개월이라는 사실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이사회는 염려를 표현하였고,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계있는 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부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약의 제18조와 제26조와 일치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 군복무 징집 대상들이 군복무와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기간의 시민 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⁷⁹⁾

베트남에 대한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규약의 제18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를 위한 법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군복무 징집 대상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지위를 요구고 차별없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⁸⁰⁾

키르기스스탄의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기 사용의 금지를 가르치는 등록된 종교 단체의 신도에게만 허락된다. 이사회는 정부 당국이 대체 복무에 대해 군 징집자의 복무 기간보다 두 배의 기간을 부과하는 이유와 고등 교육자들이 군복무와 대체 복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을 근무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긴다. (18조와 26조)

76) Ibid, Individual opinion (dissenting) by Committee members P. Bhagwati, L. Henkin, C. Medina Quiroga, F. Pocar and M. Scheinin.

77) ICCPR 제27조에 의하면, 민족적, 종교적 혹은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그런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체 성원들과의 공동체에서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거나 그들 자신의 종교를 공언하고 실천하거나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78) Communication No. 511/1992, Ilmari Lansman et al. v. Finland; Communication No. 549/1993, Francis Hopu and Tepoaitu Bessert v. France.

79) CCPR/CO/74/GEO (19 April 2002), para. 18.

80) CCPR/CO/75/VNM (26 July 2002), para. 17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제18조가 비신자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규약의 제18조와 제26조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차별이 없는 기준을 갖고 군복무와 대체 복무의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⁸¹⁾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종교적 이유로만 그리고 공식 문서에 등재된 특정 종교들과 관련해서만 받아들여진다는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사회는 이런 제한이 규약의 제18조와 제26조에 상반되는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정부 당국은 법에 제시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가 차별없이 모든 종교적 믿음과 그 외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확대시켜야 하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⁸²⁾

베네수엘라에 대한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에는 규약의 제18조에 합법적으로 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법 조항이 없다.

정부 당국은 군 복무를 요구받는 개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탄원하고 차별없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⁸³⁾

제3부 유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절차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 표준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여러 협약외기구 혹은 특별 절차를 확립해 왔다. 개인 자격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의 실무그룹이나 특별보고관이나 특별대표 혹은 독립된 전문가로서 일하는 개개인들에게 위원회의 특별 절차 기구들을 위임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종교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같은 위원회의 기구는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들을 보고하였다.

a.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터키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Osman Murat Ike의 사건을 고려하고 오피니언 No. 36/1999(터키)를 채택하였다.⁸⁴⁾ 청원에 의하면, 군복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소집 영장을 태운 후, 1996년 10월 7일을 시작으로 그는 군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심문당하고 체포되고 억류되었다. 그는 각각 수 개월인 투옥형을 일곱 번 선고 받았다. 1998년 5월 4일 그는 7개월의 선고를 받아 총 43개월을 선고받았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월 28일까지의 기

81) CCPR/CO/69/KGZ (24 July 2000), para. 18.

82) CCPR/CO/73/UKR (12 November 2001), para. 20.

83) CCPR/CO/71/VEN (26 April 2001), para. 26.

84)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CN.4/2001/14/Add.1, page 53.

간을 제외하고 Mr. Ike는 1996년 10월 7일 이후로 계속 구금 상태에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Mr. Ike는 같은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Mr. Ike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터키에서 군복무는 의무이며 당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의 경우 시민국적 복무를 합법적인 대체 복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⁸⁵⁾

실무그룹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했다.

최초의 유죄판결 이후, 양심상의 이유로 연속적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있고 같은 결과를 수반하는 같은 행, 같은 범죄가 있으며 새로운 것은 없다. (1999년 9월 18일, 체코 공화국의 헌법 재판소 결정 No.2, No. 130/95 참조) 법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거부를 아마도 임시적(선택적)일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최소한 군 복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라도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강제로 마음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실무그룹은 Mr. Ike의 1996년 10월 7일부터의 구금은 자의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앞서 말한 것들을 고려할 때, 다른 기간들에 대해서는 Mr. Ike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보는데, 법규정이 공정한 재판권의 가장 핵심적인 보증인 것으로 보편화된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인 이중소송금지 (non bis in idem) 원칙을 위반하고 내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에 비추어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996년 10월부터 Mr. Osman Murat Ike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자의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7년 1월 28일 이후로 그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제10조에 반하며 자의적이고, 그것은 실무그룹에게 제출된 사건들을 고려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중 범주 III에 속한다.⁸⁶⁾

세계인권회에 제출한 2001년 보고서에서 실무그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구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실무그룹은 - 양심과 견해의 자유에 이적 기초를 둔 -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특히 아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반복해서 갱신되는 자유의 박탈을 선고하게 만드는 형사 고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실무그룹 앞에 제기된 질문은 최초의 유죄선고 후에 군복무를 수행하라는 소환에 연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유죄선고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범법 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행해지는 자유의 박탈은 공정한 재판권이 존중된다면, 자의적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규정이 보편화된 나라에서의 기본 원칙인 이중소송금지 (non bis in idem)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미 최종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받거나 처벌받을 의무가 없다고 기술하는 시민적정치적국제규약의 제14조 7항에 나온 것처럼 구금은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기판력 (res judicata) 원칙에 근거한 당연한 추론이다.

85) Ibid, Opinion No. 36/1999(Turkey), para. 5 and 6.

86) Ibid, Opinion No. 36/1999(Turkey), para. 9-1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반복하여 구금하는 것은 처벌의 위협을 통해 그들의 신념과 견해를 바꾸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이것이 아무도 그가 선택한 신앙을 갖거나 수용할 자유를 손상시키는 강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시민적정치적국제규약의 제1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실무그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가 확립된 절차와 일치하게 확실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합법절차나 그 외의 수단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하며, 그와 같은 수단의 채택을 미루는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기소되어 그들이 강제로 그들의 신념을 바꾸도록 사법 제도가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그와 같은 기소로 인한 유죄선고당한 번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⁸⁷⁾

b. 종교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몇몇 회원국⁸⁸⁾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고 그 나라를 방문한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보고했다.⁸⁹⁾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슈는 차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정책, 입법, 혹은 국가의 관행 중 하나이며, 나아가서 국가 기관들의 입장에서 소수자들 그들이 '주요 종교'들이건 기타의 종교적이며 신념에 바탕을 둔 공동체이건 간에-에게 편파적인 무관심에 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소수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불인정, 대체 시민복무 마련의 부재, 그리고 기간으로 인해 이러한 시민 복무의 징벌적 성격 등인데 이로 인해 특히 벨라루스, 대한민국, 에리트리아, 마케도니아의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여호와 의 증인과 그 외 종교적이고 믿음에 기초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리스와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에 소수 종교에 관한 교육이 부적절하거나 부재한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⁹⁰⁾

c.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수단을 방문한 그의 보고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쟁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수단인에 대한 교육을 두 번째 자리로 밀어내는 것을 유감스러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업 지속 조건으로 군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적절한 형태의 사회 봉사나 양심적 병역 거부는 표현의 자유와 학생들이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한다.⁹¹⁾

87) 인권위원회에 보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 E/CN.4/2001/14, para. 91-94.

88)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총회의 제62차 회기에 보낸 중간 보고서. A/56/253, para. 63 and 68 and para. 4 and 5 of the Annex.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의 제59차 회기에 보낸 보고서도 참조. E/CN.4/2003/66, para. 65-68.(회원국들로부터의 회신 포함)

89)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총회의 제55차 회기에 보낸 중간 보고서. (터키의상황). A/55/280/Add.1.

90) E/CN.4/2001/63, para. 182

d. 특별보고관들에 의한 공동 서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 상황에 관하여 언급하는 공동 서신을 보냈다. 2001년 5월 22일, 그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다음과 같은 긴급 공동 호소문을 전달했다.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운반과 군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거부한 결과 구금된, Ashgabat에 있는 복음주의 침례교인인 Dmitry Melnichenko 관련. Dmitry Melnichenko는 2001년 5월 10일 군대에 소집되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선언한 이후 KizylArvat 지역의 Serdar에 있는 군부대로 끌려갔다. 2001년 5월 15일, 국가 안전 위원회의 지방 사무실로 옮겨져서 곤봉으로 머리를 포함한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맞았다. 그는 또한 모욕과 조롱을 당했으며 머리에 부착한 전선을 통해 전기충격을 받았다. 2001년 5월 16일 그는 Serdar에 있는 군부대로 다시 이송되었다.⁹²⁾

2001년 5월 20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아르메니아 정부에도 서신을 보냈다. 2000년 6월 6일 아르메니아의 법 집행 기구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발행한 결과로 내무부의 관리들에 의해 맞은 기자 Vahagn Ghukasian 관련. 내무부 관리들은 Vahagn Ghukasian의 집을 수색하여 1999년 10월 27일 아르메니아 국회에서 여러 고위 관리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일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한 Observer's version이라는 제목의 소책자 내용이 담긴 플로피 디스켓들을 압수했다. 같은 서신에서 특별보고관들은 또한 종교적 신앙에 따라 군복무를 거절하여 구금된 Gegharkunik 지역의 젊은 여호와의 증인 RafikTononian에 대해서도 염려를 표명했다. 그는 Martuni의 내무부 지방관청에 자진출두한 날인 2000년 8월 28일에 난폭한 급습을 당했다. 그는 구두 폭행을 당했고 경찰관에 의해 구타당했으며 그 결과 무릎에 심한 통증을 겪었다. Rafik Tononian은 마침내 Yerevan의 Sovetashen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2000년 11월 1일 Martuni 법원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특별보고관들이 알기에 그는 현재 Kosh에 있는 교정 노동 수용소에서 이 형기를 복역 중이다.⁹³⁾

2001년 6월 28일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터키 정부에 긴급 호소문을 보냈다. 2001년 6월 29일에 앙카라 참모총장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16명의 재판 관련. Yavuz nen, RDF 사장; Vahdettin Karabay, Confederation of Progressive Trade Unions 의장; Salim Zul, Hak-is 의장; Siyami Erdem, Confederation of the Public Workers' Trade Union 이전 의장; Hsn ndl, Human Right Association 회장; Cengiz Bektas, Writers' Trade Union 공동 의장; Atilla Maras, Writers' Trade Union 공동 의장; Ylmaz Ensaroglu, Mazlum-Der 사장; Zuhale Olcay; Lale

91)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의 제56차 회기에 보낸 보고서 (수단 방문) E/CN.4/2000/63/Add.1, para. 125

92) 의견과 표현의 권리 증진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 제58차 회기에 제출한 보고서 (국가 상황) E/CN.4/2002/75/Add.2, para. 231

93) Ibid, para. 239

Mansur; Sanar Yurdatapan; Ali Nesin; Erdal z; mer Madra; '사상의 자유 2000'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한 Etyen Mahupyan 그리고 Sadic Tasdogan 등이 터키 형법 제155조를 위반하고 사람들이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2001년 5월 23일 자신들의 사건이 군사법정에서 열린다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회부해 줄 것을 앙카라 군사법정에 요청했지만 그들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그들은 형법 제169조, 제311조, 제312조와 반테러법 제6, 제7, 제8조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State Security Court에 의해 방면되었지만, 종교 모욕으로 형법 제175조를 위반한 혐의로 1심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터키인의 자질, 공화국, 의회, 정부, 장관, 군대와 관련된 정부의 권력 혹은 사법권을 모욕한다 하여 형법 제159조를 위반한 혐의로 Uskudar 형사 법정에 회부되었다. 이 모든 소송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들 한다.⁹⁴⁾

결론: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는 1989년 3월 8일 결의문 1989/59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인정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표준을 확립하려는 위원회 활동은 1998년에 절정에 달했다. 1998년 이후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표준확립에서 이미 확립된 표준의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1993년 일반논평 22에서 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ICCPR 제18조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1999년과 2000년, 이사회는 비차별 권리에 비추어 프랑스의 몇몇 양심적 병역 거부 청원을 고려했고 그 경우들에서 ICCPR 제26조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사회는 또한 다양한 결론적 관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의 안건들을 다루면서 특히 정부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대체 복무제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가적으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종교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같은 위원회 특별 절차 기구들은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할 제도 채택이 될 때까지 사법 제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신념을 강제로 바꾸는데 사용/오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기소로 한 번 이상 유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했다.

2002년부터 최근의 위원회 결의문의 정신에 따라 고등판무관실은 현재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실천으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 형태의 복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사례의 분석과 기록물을 준비 중에 있다.

94) Ibid, para. 266

독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페터 토비아슨

들어가며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에서는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수만의 인파들이 독일팀에 호감을 표시하고 응원하는 풍경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누구도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필드를 한구석을 누비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르스텐 프링스(Thorsten Frings), 특히 마르코 보데(Marco Bode)⁹⁵⁾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정치인들이 회담을 가질 때도 그들은 자주 병역거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연방정부의 환경부장관 요한 트리틴(Juergen Trittin)의 경험을 예로 들면 그는 군대에 입소한 이후 군사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이후에 대체복무로 대신했습니다. 독일의 수상 중 몇몇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며 장관들 중에는 해외에서 대체복무를 한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몇백만의 독일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라인홀트 베크만(Reinhold Beckmann)의 토크쇼를 봅니다. 그는 여러 개의 오락프로그램과 스포츠 쇼에 나오는 지명도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 역시 청년교육센터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했으며 당시에 그는 프로젝터와 비디오 장비를 담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가 직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시에 다른 채널에서는 또 다른 몇백만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어찌면 베크만보다 훨씬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해럴드 슈미트(Harald Schmidt)의 토크쇼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했었고 당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자주 말하곤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이렇게 지금의 독일사회에서는 하등 신기할 바도 없는 정상적인 일이며 아무도 어떤 사람이 군대를 다녀왔는지 대체복무를 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독일은 유엔기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나토와 유엔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보와 국방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하고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일이라는 의

95) 마르코 보데는 월드컵에서 그의 특이한 경력을 마감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의 경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88년 초반, 신인선수 스카우터가 그를 견습으로 초청하였다. 그는 베르더 브레멘스에서 운전과 청소를 담당하며 한 달에 500마르크를 받고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잠시 뒤에 대체복무를 시작하고 그는 700마르크를 더 보낼 수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기 때문에 몹시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또한 다른 대체복무의 경험에 관해서도 잊지 않고 싶어했다. “양로원에서의 일은 나에게 젊음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견을 내놓을 때, 미국의 민감한 반응(때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만)을 가져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들, 그리고 과도한 군대병력, 이것은 모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심지어 조화로운 것일까요? 이는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현재의 저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희망을 봅니다. 독일 혹은 유럽사람들의 생각은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정치적 관점을 드러냅니다. 군의 선택은 시민적 선택, 국제법, 유엔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비해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1945년을 되돌아봅시다. 독일은 국가 사회주의의 속박을 막 벗어난 상태였고 과거 12년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종이나 종교,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독일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상한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독일과 대륙 전체의 유대인인, 독일 인구 구성원의 많은 부분에 그러한 대량학살은 일어났습니다. 수만의 독일인들이 나치의 범죄적 전쟁과 그 전쟁에서 군인으로 싸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면에서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체계가 건설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유로운 신문과 자유로운 라디오, 그리고 의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가 전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섰으며 동독에는 소비에트의 관할 하에 있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서쪽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연합국의 점령군 휘하에 있는 독일 연방 공화국이 들어선 것입니다.

4년 후인 1949년, 서독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70명의 여성과 남성들 중에서 4분의 1이 병역거부의 권리를 모든 이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방의 헌법 일부분에서는 이 권리는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내용의 지지자들이 소수파에 속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반영하고자 했던 이 소수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수만의 청원을 받아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한 논쟁의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비무장화되었습니다. 강압적인 병역의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군대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논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논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시의 전쟁의 경험은 여전히 현실이었기에 이 논쟁을 아주 단순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강제징집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인들은 수천의 청원서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1949년 이래로 독일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전쟁을 돕

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것은 “신념, 종교, 양심, 정치사상⁹⁶⁾”의 자유를 보장하는 4항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독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고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년 후에 독일의 상황은 많은 부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군대가 생기고 징병의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적자”인 독일의 대통령 테오도르 헤스(Theodor Heuss)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추측컨대 민주적인 징병제가 20년 전 히틀러에 의해 재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독재자 무솔리니에 의해,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에 의해 역시 강제 징병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강제징병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주적이지도 비민주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는 단기간 내에 엄청난 양의 군대가 보충될 수 있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독일은 1956년의 민주적인 발상들에 의거해 당연히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용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제 징병 제도의 도입과 함께 다시 독일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병역거부 권리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게도 이 권리가 다른 기본권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조 4항에 보장되어있는 종교의 자유⁹⁷⁾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조 5항의 언론의 자유⁹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쓰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 권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개인은 군대기관에게 병역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군대기관이 이를 받아들일도록 할 수 있다.’

1949년 이래로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정부가 추구한 재무장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분단, 세계정세,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냉전체제에서 더 강한 반쪽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독일의 변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독일 군에 반대하는 운동 또한 강했습니다. 재무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비판적인 여론이 대세였지만 군사화 지지자들과 정부에 의해서 중상모략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⁹⁹⁾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강제징집이 큰 문제없이 시행되었다면 그들은 소수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거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거부권이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단순

96) 독일법규는 한국헌법의 19조, 20조에 상응한다.

97) 피해를 주지 않는 종교의 자유는 인정된다

98)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연설이나 글,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로 방송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99) 심지어는 법정에서의 공방도 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하인리히 하노버(Heinrich Hannover) 변호사의 정부 대 게리히트를 읽어본다면 흥미로울 것이다.(안타깝게도 독일어로만 출판되어 있다) 1954-1974 Erinnerungen eines unbequemen Rechtsanwalts, Aufbau-Verlag Berlin, 1998.

하게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승인방법”이라고 불리는(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한 테스트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은 곧 “병역거부위원회(Committee of Conscientious Objection)”에 출두하여야 했습니다.(병역거부 위원회는 병역거부의 이유를 시험하고 질문하는 위원회입니다) 보통 한 병역거부자가 4명에게 질문을 받습니다.(여성은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군 변호사, 독일 국방성에서 일하는 사람, 여전히 국토를 방위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등 4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명은 청원자들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돕는 대신에 그들을 거절하기 위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청원의 내용을 듣고, 종종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들은 후에 이런 결정을 내리곤 했었습니다. "당신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거부에 항의하여 병역거부자들은 2번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병역거부재판소(Chamber of Conscientious Objection)”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은 국방위원회의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얼굴들, 그들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도마저 거부된다면 이제는 행정법원의 관할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그들의 신념에 반하여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에 종사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감내하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베를린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의 수도인 그 곳에서는 그 당시까지 무장해제 되어있었고 시민들이 국방의 의무로부터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1978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병역거부 신청 거부의 영향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한 젊은이가 동여맨 짐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로 한 변호사가 국방부에 탄원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청원은 등록되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지원자는 지난 주 그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 의해 규정된 제한을 따르기 위해서 지난 시간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1977년 초¹⁰⁰⁾, 유럽연합의 최고회의는 모든 경우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역의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개인이 병역대상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공정한 재판에서 독립적인 재판부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체복무는, 민간부문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되고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결정은 1977년 냉전의 한복판에서 이미 확립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이 명백하게도 서유럽의 안전이 병역거부자들에 의해 위협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100) 1977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권고 816호, 1977년 10월 7일 국회에서 채택.

반면에 개별 국가들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공정한 제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1987년 4월 냉전이 엄존하던 시기, 유럽 정상 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하의 병역거부에 대한 규제와 법률을 국내법에서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¹⁰¹⁾ 또한 군복무 중 병역거부에 대한 정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더하여 대체복무는 강요되거나 군복무기간보다 길게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년 전인 1984년 독일은 이러한 제반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¹⁰²⁾ 그리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테스트 과정도 바뀌었다. 병역거부위원회와 군법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군복무 중인 군인이 병역거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¹⁰³⁾ 병역거부는 군 입대에 앞서 서면으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역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범죄 기록도 없다는 경찰의 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역거부의 사유에 대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본적인 의혹이 제거된 상태에서 국가복무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해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병역거부 인정 비율은 90%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사유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장하고 이를 필요한 양식으로 제출하는 사람들은 인정된다.

올해 2003년은 승인 과정이 한번 더 바뀌어서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보다 쉬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적인 서식을 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과 설명만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군복무 이상의 일을 하는 군인들도 그들이 군인이 되어 전쟁에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는 결심이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병역거부자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2년 동안 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권리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고로 병역거부가 엄밀하게 남성의 문제만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제한 역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병역거부자들을 시험한 후에야 그들의 권리를 승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에서 이러한 제한들은 용납되어 지고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과정이 존재하는 한 인권에 대한 요구는 오직 승인되거나 형식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을 테스트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병역거부자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비판의 기준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최고 행정법원이나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는 모든 이들이 아래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의 결심이란 종교나 정치, 윤리적 신념이나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승인의 이유가 되

101) 1987년 4월 9일, 강제적 병역제도 하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럽정상회의 권고 R 87. - 첨부1 참조.

102)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의 동일한 법의 변화가 이 법규를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3배 이상 연장되어서 행하여 졌다.

103)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군인이나 예비역들, 한번 병역거부 신청이 거부되어 2번째 거부하는 사람들.

어야 하는 것입니다.¹⁰⁴⁾ 결론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고, 현재는 위원회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1984년까지 청원의 반이 기각되었으나, 법안의 변화한 이래로 90%의 신청자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긴 시험기간을 견뎌 내어야 했지만, 다른 이들은 15분내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념을 설명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가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위원회 구성원들의 관점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독일에서의 병역거부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신청자 수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¹⁰⁵⁾ 국가복무, 특히 독일연방의 안보정책은 이로 인하여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군기관이 소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는 항상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군사적 행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군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군대에서 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급자들의 지원을 받아 병역거부 인정과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도 가능한 한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군 사회학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게 되는 결심을 결정짓는 요소들에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1991년에 걸프전에 참여하게 된 일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은 병역거부 결심에 놀랍게도 작은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인 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 중에 병역거부자가 있으면 병역거부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진정한 남성”이 되기 위해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를 상상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역시 높아집니다.

대체복무

1961년, 독일은 대체복무를 도입하였습니다. 1961년 대체복무를 시도한 340명은 이미 사회복지기관, 병원,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 양로원 등지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의 영역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기관과 정치가들은 참호에서 일하거나 의미 없는 작업들로 대체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집으로부터 격리하고 신청자들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제는 아무도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훨씬 더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최고로 일을 잘

104) 연방헌법재판소는 20.12.1960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양심에 따른 결정은 개인의 심각한 믿음의 갈등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에 이행할 수 없는 선악의 판별에 대한 모든 진지한 결정이다. 최고행정법원은 3.10.1958에 규정한 바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 신념을 가진 개인이 그 혹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양심의 이유로 행동한다면, 그 동기의 종류가 그 결심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105) 첨부 2를 보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기술적인 면에서의 장벽들을 급속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독일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¹⁰⁶⁾ “18세가 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양심에 근거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역은 군복무에 비해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 1971년이래 대체역은 대체복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복무는 대안적이거나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합니다. 만약 개인이 군사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역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제외사항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버지들 역시 군사 의무를 행하여야만 하는 강제는 없으며 역시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이 법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체복무에서 승인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사회적인 부문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회적인 부문의 우위는 도표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은 환경보호나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하는 일이나 스포츠 부문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58%가 누군가를 돕거나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12%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2%의 사람들이 정원관리를 돕고, 1%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고, 5%의 사람들이 관리인을 돕거나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1%의 사람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전을 합니다. 5%의 사람들은 응급차를 운전하고 6%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도우며 5%의 사람들은 장애인 어른들과 아이들을 돕고 그들이 집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¹⁰⁷⁾

대체복무는 거의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기관에서 행하여집니다. 사적인 기관들은 아마도, 주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일 수 있지만 공적인 시설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하여, 이 기관들은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관(Zivildienststelle)으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권위 있는 담당 부서에 관료에 의해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고용 가능한 기관으로 승인 받게 되면,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은 기관에 어느 곳에서든지 일할 수 있도록 등록되게 됩니다. 그들의 업무 시간은 다른 고용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은 군복무자와 같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관련 정부 기관에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소집되기도 하고 동일

106) 독일헌법 12a조 1절과 2절 : 1) 18세 이상의 성인남자는 국경의 방어나 도시의 방어의무로 구분되는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2)무기의 사용을 포함하는 전쟁을 거부하는 양심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는 자는 대체하는 의무를 할 수 있다. 이 대체업무의 기간은 군복무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대 기관이나 국경선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7) 첨부 3을 보라.

한 처벌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무단이탈한 병사(Absent without leave, AWOL)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5년까지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3년까지 감옥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¹⁰⁸⁾

정식으로 대체복무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대체복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집된 사람들은 대체 복무를 할 장소를 찾기 위한 두 달의 시간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아무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적절한 사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요청에 따르고 있고 모든 공공 책임자들은 개인과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소집장을 발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집장을 기다리지 않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고 후에 소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부로 인해 일정부분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대체복무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대기자 명단에 가능한 한 빨리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 자원했습니다. 소집장에서는 당신은 법적으로 옳은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소집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서 5년을 보내야 합니다.

요즈음은 군대가 대체복무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징집영장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지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직권에 의해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군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대체복무에서는 대체복무로 끝나게 되는 다른 서비스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소위 해외에서의 복무라 불리는데, 독일의 젊은이들의 필수적인 관심사에 속합니다. 독일의 기관에서는 외국의 자매기관에 그들을 보내서 그 곳의 사회 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화나 시민권, 홈리스들과 일하거나 장애 어린이들과 일하는 단체들이 이에 속합니다. 어떤 독일인들은 이곳 서울에서 대체복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사회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평화단체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지역이 천 군데에 달하고, 대략 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의 또 다른 가능성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히틀러 통치 체제에서 박해받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죽음의 캠프에 억류당했습니다. 육십 년대 중반에 세계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새로운 독일에서 다시 한번 투옥되었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외국의 인권 단체들이 독일 정부에 항의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외국 정부들은 국제적인 대화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천명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이 감옥에 갇혔고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를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후 독일의 가장 중요한 법률가 중의 하나인 아돌프 아르트(Adolf Arndt)는 1968년 독일 법률가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은 그들의 양심의 의무로 인하여 강제적인 의무를 해야한다는 우리의 실정법의 체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감성과 도덕적 이유라는 기준이 이러한 형벌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¹⁰⁹⁾

108) 그러나 요즈음 쓰레기통 비우기를 거부했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브라운 슈바이그 판결과 같은 견해로 결심에 대해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허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철학은 (대체복무의 일) 국가에 의해 적대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비기독교적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의 구성원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관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된다.”¹¹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의 범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의 비판자들은 국가 사회주의의 정의만이 그들은 허용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독일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당시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 (1966-1969)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후에 (1969-1974) 독일 대통령이 되는 새로운 해석과 여호와의 증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의한 이유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가 나중에 병역거부자로 승인 받아야 하더라도 병원에서 대체복무의 기간보다 1년이나 그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제외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969년에는 이것이 독일에서의 믿음의 자유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서나 재해 방제를 위해서 일하는 경찰이나 자원봉사로 2년 이상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병역의 의무나 대체복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50만의 독일인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대체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백만하고도 오십만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허용된 영역으로 진출할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경험적인 연구가 된 바는 없습니다. 결과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자기완결적인 설명이라고 해 두겠습니다.

대체 복무의 도움을 받아 독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몇 가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대체복무는 대체복무가 없고, 국가 보조가 부재한 부분에서 독일인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5%를 차지합니다. 대체복무의 급작스런 증단은 현저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대체 복무의 덕으로 우리가 국가 복지에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 이후 독일의 국가 복지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감축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대체 복무는 국가 복지만큼 그때쯤이면 역사의 중요한 화제가 될 것입니다.

후기

저는 1973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975년에서 1976년 대체복무를 수행했습니다.

시험관의 임의적인 결정은 저 스스로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첫 번째로 무장한 군에서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인권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 후에 우연히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109) Harrer/Haberland, Zivildienstgesetz, Kommentar zu § 15a (Seite 172), Leverkusen 1992
에서 인용

110) 8.10.1962, 브라운 슈바이그 판결에 의하면 하인리히 하노버, 공화국 대 게리히트 1954-1974
Berlin, 1998, Seite 144.

당시의 연 5.9%에 지나지 않는 사회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자주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비난받곤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버리라는 충고를 받았는데 다른 쪽이란, GDR 인 동독-공산주의자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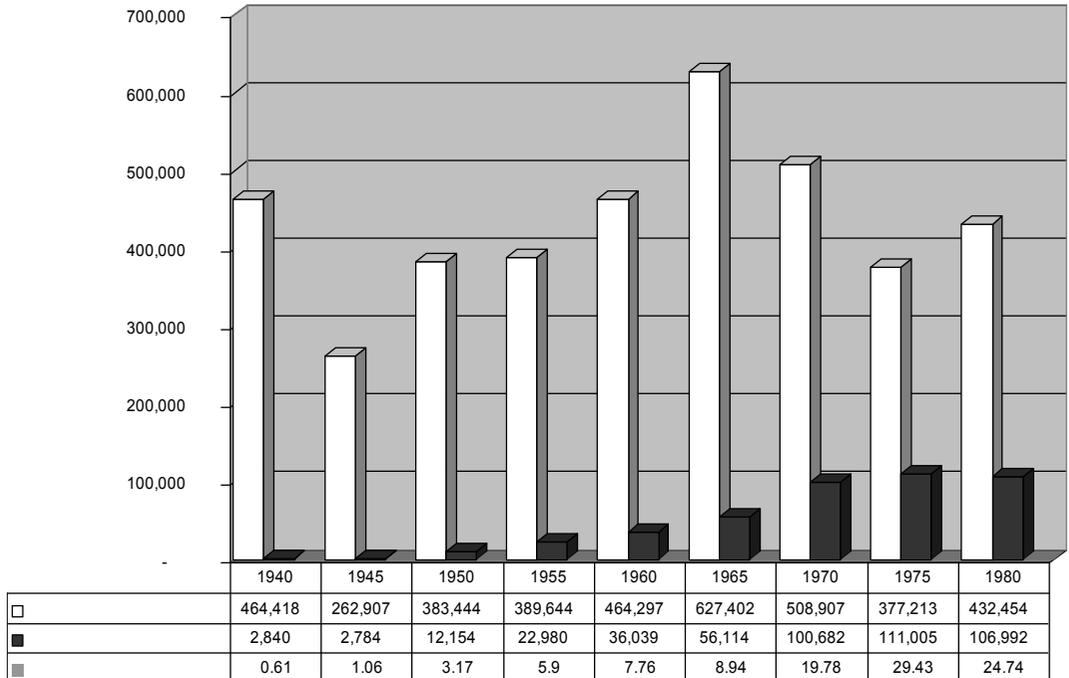
몇 주 전 나는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사무소'에서 일한 지 25년이 된 것을 축하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식에서 브레멘의 국방성의 장이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대체복무를 책임지는 대표자며,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985년 이래로 즉 나는 독일의 다른 부분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 동독에도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동쪽의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 통일 후에 나는 동독의 비밀경찰이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쓴 자료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침: 다른 쪽으로 가라. 당신은 국가의 반역자다. 이 경우의 다른 쪽은 자본주의 국가, 서독이었습니다. 군대와 비밀경찰은 자신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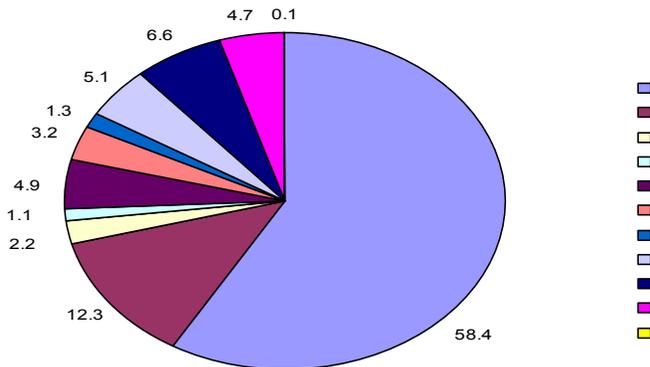
내가 구 동독에서 만난 병역거부자들은 냉전기간 동안 내내 1990 년 독일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평화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그들 중 몇몇은 독일 연방의 국회의원, 장관, 수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자료1.

(1940 1980)



참고자료2.



중화민국시행 대체복무제도 소개

청 타이리

1.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게 된 원인

근년에 들어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고도의 정밀과학무기가 끊임없이 개량되고 있으며 국방에 필요한 병력이 점점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에서 시행하는 精實素의 병력도 크게 감소하게 되어 실제 필요한 병력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1998년부터는 군복무 징집대상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짐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내정부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국가의 안전, 군복무의 공정성,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검토를 하였다. 국가행정원에서는 우리나라 본래의 병역제도와 자원제도를 함께 유지하는 한편 유럽에서 시행하는 대체복무를 참조하여 병력공급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국익에 부합이 되는 보고를 하여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입법원은 2000년초 대체복무제도시행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행정원은 2000년5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하는 대체복무제도 시행 배경과 계획 그리고 결정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1. 정책배경:

(1)행정원 각 기관의 <병역대체복무>에 대한 연구는 중앙연구원 陳新民교수가 주재하여 1993년부터 시작하고 1993년 8월에 완성된 <병역대체복무-사회복무의 연구>라는 보고를 참고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유럽에서 시행하는 대체복무범위-경찰 복무, 국방기술원, 사회봉사, 민간봉사, 해외협력복무, 종교적 양심복무 등을 포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1994년 내정부에서 연구한 유럽의 병역제도보고서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2)우리나라 병역 제도 중에 丙급 입영 대상자는 신체상의 문제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않고 반드시 6일간의 군사훈련을 하여 3년 간의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는 <국민군복무><의무공평>이라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 특히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가운데 자신이 배운 의학기술을 사용하여 신체상의 문제점을 만들어 군복무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개혁해야 하며 공평한 병역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복무를 연구하게 되었다.

(3)여호와의 증인 교파의 병역 대상자들은 자신의 종교 신념에 근거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군복무 거부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와 충돌하

기 때문에 반복적인 형벌을 받게 되어 우리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며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남자들이 사회 봉사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므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의 병역제도를 참조한 이런 정책은 우리 국가와 사회, 또한 종교 신앙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이다.

(4)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군대정책은 <정예화, 소규모화, 강력화>된 현대화 군대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병력공급문제와 청년노동력을 잘 활용하여 사회봉사에 투입하고 정부의 공공복무의 질을 높이는 문제, 더 나아가 군복무를 공평하게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내정부는 많은 회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제도가 <대체복무실시>제도라고 여겨 대체복무제도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5)1999년 7월6일 행정원이 <범정당사회추진그룹>과 <사회복무민간추진연맹>을 소집했을 때 대체복무제도는 반드시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기초 위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표시하였다.

1. 병력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병력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병역제도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99년 5월21일 입법원이 결정하고 2000년 7월1일 시행한다.

(6)입법원은 2000년1월15일 <대체복무제도시행조례>를 통과시키고 행정원이 결정한 다음 2000년5월1일 시행한다.

2. 계획 부제:

대체복무제도는 우리나라역사에서 새로운 조치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중대한 정책항목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공평한 병역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군대 수량 및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초 위에 제정하고 실시한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인원을 분배하여 각 단체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한다. 필요한 특정 인원수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구성하여 사회 치안, 사회 봉사 등에 투입한다. 이 모든 조치들은 공개적이며 공평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2. 집행 및 운영현황

1. 대체복무의 분야별 구분:

- (1) 사회치안분야: 경찰복무(보안경찰력, 지역순찰, 교통보조, 교도기관 경비), 소방복무 등.
- (2) 사회봉사분야: 사회봉사, 환경보호(환경보육, 수력유지보호), 의료, 교육봉사.
- (3) 행정원을 통해 지정된 기타 분야: 문화, 사법행정, 외교, 토지측량, 경제안전, 공공행정, 체육 봉사.

2. 자격 조건:

대체복무는 두 가지의 근원이 있다. 첫 번째는 상비역 신체등급의 수가 초과할 때, 진심으로 원할 때,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체복무 신체 등급자를 위한 일률적인 대체복무이다. 상비역 신체등급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특기 자격 및 확고한 의지의 소유자, 가정 요소, 종교적인 사유 및 일반적으로 적격한 경우 등 다섯 가지이다.

(1) 종교적인 사유: 신앙 생활을 한지 2년 이상 되었으며 및 심리 상태가 상비역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대체 복무를 신청해야 한다.

(2) 가정 요소: 징집된 사람의 가족이 65세 이상, 15세 이하 혹은 심신 장애인; 징집된 사람이 이미 결혼했으며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징집된 사람과 배우자 외에는 다른 가족이 없을 때; 징집된 남자의 가족이 중급 이상의 심신 장애자이며 가족을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징집된 남자 외에 다른 가족이 없을 시에 해당된다.

(3) 특기 자격: 징집된 사람이 대체복무해당기관의 국가고시 합격증 소유자, 중앙사업주관기관에서 그 특기에 대해 증서를 주었으며 관련사항의 학력, 경력, 전문 훈련자를 순차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4) 확고한 의지 소유자에게 주는 자격: 자원 봉사 관련 항목의 일을 만 일년 150시간 이상이 되어 그 봉사를 증명할 수 있는 남자는 우선적으로 연관된 항목의 대체복무를 한다.

(5) 일반자격: 자격을 갖추기 전의 입영대상자의 경우, 위에 열거한 4가지 사항을 갖춘 후의 신청자.

3. 복역 판정

(1) 복무 기간: 상비역 신체등급자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기간은 2년 2개월로

상비역 복무기간보다 4개월이 더 길다. 신체등급 혹은 가정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기간은 1년10개월로 상비역 복무기간과 동일하다.

(2) 징집 연기: 대체복무를 고려하는 입영 대상자가 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고를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징집 연기의 사유가 소멸했을 시에는 여전히 징집을 고려해야 한다.

(3) 복무의 중단: 복무중단의 사유를 갖춘 자는 대체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 기간은 대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조기 퇴역: 가정에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여 가족 생계 부양의 책임이 생기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주관기관의 조정자는 조기퇴역을 결정한다.

4. 권리 의무

대체복무는 군복무의 일종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자의 권리의무는 상비역 복무자와 동일하다. 주부식비는 지역물가와 식사비용을 고려한다. 지역 단체는 식사를 하는 자들에게 1인당 90원을 제공한다.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일 120원을 제공하는데 상비역 복무자보다 조금 많다.

상비군의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효율적인 관리원칙 하에 복무기간이 1년 이상 된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근무처의 허가를 얻어 야간 비상 근무(공무) 시간외에 외부 연수 혹은 학원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한 주에 2차례로 제한하며 매번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밤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숙소로 돌아와야 한다.

5. 징집 훈련

대체복무훈련은 군사기초훈련과 전공훈련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내정부, 국방부의 사무처에서 주관하며 5주간의 군사기초훈련을 받는다. 훈련내용은 정신교육, 군사과정, 전공과정, 일반과정, 정치교육 및 긴급구호 등 관련된 과정을 포함한다. 후자는 각 사용기관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끝낸 후에 근무지의 장(長)에 의해 2주에서 12주의 훈련과정을 규정한다.

6. 분야별 배치

대체복무 대상자는 부서장 임의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며 「부서장의 자격」으로 복무

대상자가 신청할 시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업무에도 임명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군사기초훈련기간에 「일반 자격」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관할한다. 각 복무별 사용기관은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의 학력 및 의사를 반영하여 분야별 배치한다.

7. 근무 및 생활관리

(1) 대체복무실행 조례규정은 내정부를 대체복무의 주관 기관으로 하여 대체복무자들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 계획, 감독한다. 근무처의 중앙 각 주관기관이 대체복무의 필요한 기관이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대체 복무자들의 복무와 생활 관리 규정을 하여 근무처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징집된 자는 가정사의 원인 외에는 단체기숙사에서 숙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무자의 수가 너무 적거나 복무지가 외지이거나 분산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별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

(2) 1998년 8월3일부터 대체복무를 징집했으며 지금까지 이미 17차의 징집된 자들이 대체복무행렬에 투입되었다. 현재는 약 2만 여명의 복무자가 있으며 16개의 기관에 분포되어있다. 그 가운데 사법부, 법무부(矯正司, 고등법원검사서, 행정 집행서, 조사국), 경제부(水利署, 무역조사위원회), 교육부, 교통부(민간항공사, 관광사), 외교부, 행정원921재난후 재건축추진위원회, 행정원 국군퇴역군지도위원회, 행정원 원주민 위원회, 행정원 문화 건설위원회, 행정원 환경보호서, 행정원 위생국, 행정원 농업위원회, 행정원 노동위원회, 행정원 체육위원회, 내정부(警政署, 소방서, 營建署, 社會司, 地政署, 役政署, 아동국), 420여개 복무처(직할시, 현시정부소속 근무지), 2700여개 복무처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대체복무자들은 복무하는 기관이나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대체복무 실행 초기에는 대체복무 전임기관-役政署-이 미처 설립되지 못하였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에 따라 조를 나누어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이 그 수가 많고 근무지도 각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비록 정기, 비정기적으로 감독 방문을 하였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감독, 협조 관리가 어려웠다. 따라서 내정부 役政署가 90년 3월1일에 설립된 후, 즉시 관리감독체제를 조직 완성하였으며 타이베이, 타이쑹, 타이난, 타이퐁 4곳에 감독자 및 1개의 지도과를 설립했다. 지역 감독의 효력은 지도처(役政單位)와 복무처(服務單位) 및 징집된 자들과의 연결통로가 되어서 복무관리 이념을 전달하고 각 복무처의 인력 운영과 관리 상황을 파악하여 대체복무자들이 규율을 엄수하도록 촉진하는 일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나타난다. 役政署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내정부余部長의 지도하에 役政署는 각 복무처를 방문하였고 퇴역자좌담회를 열었으며 대체복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을 위해 협조하였다.

내정부 役政署督考科는 役政署 설립 후 정기, 부정기적으로 감독 방문했으며 복무처의 관리 현황, 복무자의 생활을 깊이 있게 파악했다.

8. 지도 교육

내정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복무자를 지도해서 심리 및 생활의 어려운 점을 해결토록 하며 대체복무자들의 심신의 상태 및 관리 규율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훈련과 전문적인 지도자의 계획 하에 지도교육반을 연다. 지도교육과정에는 체능훈련, 기본 교련, 심리 상담, 생활 교육, 품행 교육, 법기 교육 및 범법 방지 연구의 실무경험이 많은 지도 교수들을 통해 심리 상담 및 단체 지도를 실시한다. 지도 교육을 받은 복무자는 원래 복무처로 돌아간 뒤 꾸준히 지도 교육을 하여 다수의 복무자들의 생활과 근무현황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 내정부 役政署는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9. 대체복무 각 분야별 인력운영 현황 및 성과

대체복무는 2000년 8월3일부터 지금까지 이미 17차 징집 되었으며 현재 복무중인 남자 2만 여 명이 경찰행정 등 16개의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내졌으며 경찰복무 등 13개의 분야별 업무에 복무 중이다. 그 중 1700여명은 921지진 재해 구조에 투입되어 재해민이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각 복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1)경찰복무:

1> 안보경찰역, 구역 순찰, 교통 정리: 사용 기관들은 내정부서, 警政署 및 행정원 921지진 재해후 재건축추진위원회, 안보 총단 및 직할시, 현(시)청경찰국, 안보경찰역은 기동대기조의 임무를 맡으며 군중사건을 처리한다. 나리풍재해 기간에 그 지방정부를 도와 구급 및 복원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미국 911사태 후 항공경찰국을 지원해서 비행장내의 안전검사 및 치안을 담당하였다. 돕고 있는 구역의 순찰, 안보, 시내 청결 유지, 쓰레기 배출 등의 일을 한다. 필요시에 경찰력을 보장하며, 교통보조원은 교통정리,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한다. 복무자들은 사회 봉사 및 공공 건설에 투입되므로 인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교도기관 경비: 사용 기관은 법무부. 복무자는 법무부에 속한 교도소, 기능 훈련소, 교도학교, 경비소등 기관에 보내진다. 주요 업무는 (직접적으로 접견인과 접촉하지 않음) 초소 경비, 안전 감시 및 외접견실 등에서 복무한다. 그 외에 교도 관리원으로서 공장, 숙소, 외역, 접견 및 외래 진료등 보조활동.

(2)소방복무: 사용 기관은 내정부서 소방경찰, 921지진재해후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교통부(민항

국). 복무자는 각 현(시)청 소방국, 및 소방서 각 소방단에서 복무한다. 구급 활동 및 재해시 화재 경계선 설립을 지원하고 소방호스운반, 도로진입로 정비 및 후방 근무등 보조 업무이다. 실시 이래 복무자 전수 훈련시 다수가 평균, 초급재난구조요원(ENTJ)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시민에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 소방역 복무자는 열심히 소방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인 및 구제하는 사회활동을 희생적으로 하고 소방기관의 구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3)사회봉사: 사용 기관은 내정부社會司. 921재난후 중건 추진 위원회 및 행정원퇴보회(退輔會), 내정부 소속 노인복지 및 심신장애 복지기구, 직할시 및 현, 시청, 노인 양호 기구 및 퇴보회(退輔會)소속 영세민 가구 및 原民會소속 사회재난기구, 주요근무 복지기구 및 심신장애 복지기구 및 지역사회 노인, 영세민, 원주민 및 심신 장애자 일상생활 보호, 급식 봉사, 건강회복 도움 및 기타 보조적인 근무. 대체복무의 실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정부 복지 공급능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 복지의 질을 드높인다.

(4)교육봉사: 사용 기관은 교육부 및 921재난후 중건 추진 위원회로 구성되며 전국 각 현, 시의 천 여 곳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교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산속, 외딴섬, 격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및 교육행정 일을 도울 수 있다. 특수교육 전공자는 특수교육학교에 배치한다. 교육보조전공자는 각 현, 시, 학교 외부행사 및 학교 협조, 복학 보조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교육봉사 복무를 하는 사람은 능률이 높고 열정적이어야 한다. 대다수 학교에 임명된 자는 학내 안전의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남자들은 기타 교육행정 보조일을 도와서 기본 계층 학교인력을 보충한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남자는 멀리 떨어진 농촌의 학교 및 특수 교육 일을 돕는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수준차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지역 교사부족문제를 해결하며 특수직능 교육능력을 충족시켜 중퇴 학생수를 줄일 수 있다.

(5)의료봉사: 사용 기관은 행정원 보건소 및 행정원 퇴보회가 된다. 복무자는 의료관리담당, 병균관리, 전염병 통보, 직업위생 및 보조 의료등 의료보건과 연관 있는 일을 한다. 우선은 산지, 외딴섬, 격지 위생소 배치로 격지보건소 인력을 해결하여 도시와의 차이를 줄인다.

(6) 환경 보호봉사:

1. 환경 교육: 사용 기관은 행정원 환보서, 921재난후 중건 추진 위원회 및 교통부 민항국, 직할시, 현, 시청 환경보호국 및 교통부가 되며 공항역 보안 센터 복무, 오염도 보고, 청소, 환경 교육 홍보, 공항 소음 방지 및 보조 환경조사, 자원 회수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환경보호 복무자는 우선 화공, 법률, 환경 보호 공사 등에 연관있는 사람을 선택, 복무자는 전체 수준을 높이고 특히 환경 보호 인력을 보충하며 국민의 신고 및 검거의 효율을 높인다.

2. 수력 유지 보호: 사용 기관은 경제부 수력서 및 921재난후 중건 추진 위원회가 되며 복무자의 주요 근무는 하천 제방, 수문 관리, 수질관리 기본자료조사, 수력 공사측정, 공무 행정 및 기타 하천 배수, 바다 제방관리.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하천관리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며 전국 각 하천 면적이 증가되며 최근 하천위생경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환경보호 봉사자의 투입은 관리인력을 증가시키므로 태풍, 홍수가 발생했을 때 각 배수역 수문에 주둔하고 하천내외 수위를 체크하고 수문상황 및 배수역을 운행해, 효과적으로 하천재해를 예방, 대처할 수 있다.

(7)문화봉사: 사용 기관은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 및 921재난후 중건 추진 위원회가 된다. 복무자는 직할시, 현, 시청 문화국에 파견되어 담당지역사회 기본 상황조사, 지역사회 학습체계 수립, 지역사회 선도등의 일을 한다. 복무자는 지역사회 건설에 투입, 취지는 지역사회와 특색을 발굴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조시키고 청년의 활력을 취합하고 사회활동추진, 지역사회 예술문화 활동을 보조, 지방문화사 조사를 협조하여 지역사회 연락망 건설 등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8)사법 행정봉사: 사용 기관은 사법원, 법무부 행정집행서 및 대만 고등법원 검찰서가 된다. 복무자는 사법원 소속 각급 병원 사법부 소속 지방 경찰서 및 현, 시 행정집행처에 배치된다. 복무자는 전공 자격증, 공무원임용 자격 및 학력 분배 담당 행정 업무능력 및 학력 분배 담당 행정능력에 따라 배치한다. 그리고 법률 및 자료수집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9)외교봉사: 사용 기관은 외교부가 된다. 그 가운데 37명이 민국90년(서기2001년)11월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등 21개 국가에 파견되어 컴퓨터 정보, 축산, 농업 기술분야에 종사했으며, 의료, 수력공사 등을 전공한 복무자는 외국 거주 기술단 및 의료단으로 많은 공헌을 했으며, 그 지방 정부를 도와주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 외교영역 확장 등을 수행하고 우방의 정을 증진 했다.

(10)토지 측량봉사: 사용 기관은 내정부 지정사 및 921지진 재난 후 중건 추진위원회가 된다. 복무자는 내정부 토지 측량국 공작역(站) 직할시, 현, 시청 배치 기본 측량 담당, 지적 조사, 택지 측량 등 측량하는 일을 한다. 측량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각 중요한 측량,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11)경제 안전봉사: 사용 기관은 경제부(무역 조사위원회)가 된다. 복무자는 무역위원회의 구제 연합자료수집복무집단, 구제 자료 수집 봉사단에 파견되어 대만성 공업동업공회 협조, 대만성 공

협회, 현,시공업회, 무역 구제 방화벽 업무담당, 수입구제 안건처리, 산업손해 조사업무등 무역구제 자료수집업무. 공장, 회사에게 WTO관련된 법률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WTO가입후 받은 충격을 줄일 수 있다.

(12)공공 행정봉사: 이 복무자들은 보통 열악한 가정 출신으로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복무자는 매일 근무가 끝나고 귀가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다. 보통 집과의 거리는 1시간 이내이며 정부의 공공 행정 등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약700여명의 복무자는 이 대체업무를 완수하고 가정도 돌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열악한 가정을 돌봐야 하는 국가 정책이기도 하다.

(13)체육 복무: 국가 체육 정책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며 국가 체육 경기 실력을 향상, 우수 선수를 흡수하기 위해서 체육복무를 실시 선수를 육성할 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정부 체육활동을 확장 할 것이다.

3.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개요

유럽 각 국에서 실시하는 대체복무제도의 한가지 이유는 병역제도와 신앙에 근거한 양심의 충돌로 양심범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많은 나라에서 헌법 및 병역법 중 특별 규정이 있어 종교신앙의 이유로 군복무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대체 복무로 병역을 대신한다. 이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심범 사례가 있어 병역 거부로 인해 형을 선고했다. 어떤 형기는 병역 기간의 몇 배가 된다. 우리나라는 종교 신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 대체 복무 실시 조례 제5조 규범; 복무자는 종교 이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 수정에서는 입법원 통과 부대(附帶)결의문 대략; 종교 신앙을 이유로 양심범이 된 사람 그리고 병역거부로 기소된 사람 모두 국방부에서 처리한다.

1. 신청 자격:

종교적 신앙이 2년 이상인 병역대상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병역을 복역할 수 없는 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게 되면 사유서와 자기소개서 보증서 및 종교 단체의 증명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종교와 그에 속한 종교단체는 필히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2. 심의 규정:

내무부는 직할시, 현정부의 안건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1> 3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완성한다.

2> 심의시에는 복무자의 신앙과 동기 심리 등의 이유가 진실인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고 그 종교의 책임자나 증인을 출석시킨다.

3> 심의안건에 의문이 있어서 허가를 결정할 수 없을 시는 일정기간을 관찰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장 1년을 넘을 수 없다.

3. 예방 조치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자는 대체복무조례 제54조에서 병역 해당자로서 종교적 이유를 가장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실시 상황

1.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의 출현을 피하기 위해 1999년 6월15일 대체복무실시 이전에 각 직할시 현정부에 서한을 보내 병역대상자들의 종교적 이유, 양심적 이유를 조사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실시 이전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하며 13인의 처리중인 사람들은 2000년 5월까지 신청하도록 하였다.

2. 9명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양심범들에게 군복무기간의 1.5배를 계산하여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다.

3. 2000년 12월 10일 총통의 특별사면을 받은 19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3명이 이미 대체복무로 일하고 있으며, 그 밖에 16명은 이미 감옥에서 3년 이상 복역하였거나 1차 재판에서 5년 이상의 형기를 언도받았으므로 이미 병역법 복무 의무를 충족한다.

4. 근래에 71명의 입영대상자[여호와의 증인 59명(그 가운데 9명은 다른 종교의 양심범), 불교인 11명(그 가운데 10명은 이미 출가하여 중이 되었음) 및 도교인 1명]가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대체복무 심의위원회는 대체복무제도에 전적 동의하며 사회봉사로써 병역을 대체하는 원칙을 존중한다. 이미 전 분야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대상자들은 이미 장기적인 종교적 훈련을 받아 온화하고 깊이 사랑할 줄 알며 인내심이 있어 사회복지시설업무를 담당하는데 호평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업무를 질을 높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호위하는 국제적 면모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5.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자가 없었으며 본부 대체 복무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수정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4.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

1. 상비역 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일하며 공공의 안전 위생 및 사회봉사에 투입되어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 독거노인들 및 지체장애인들을 돌보아 주며 사회치안을 강화하며 국토 및 환경의 보호를 담당하고 민중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3. 대체복무자들은 공평하고 공의롭고 공개적인 원칙 하에 국가 사회를 위해 병역 의무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4. 정부의 공공 봉사 효율을 증진시키며 국군의 정예화를 촉진하며 복무자들의 효율적 운용으로 정부, 국군, 사회 및 병역대상자들의 「4승」 국면을 창달한다.

5. 미래의 발전 방향

1. 대체봉사 범위확대 및 인원수 사회 기본층으로 봉사 확대

대만이나 세계 각국의 고령화 사회 및 출생률 저하 등 사회 노년화 시대가 임박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간과할 수 없다. 정부에서 경비나 인력을 제공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도를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 봉사에 투입하면 세계적 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 규정화하므로 강화할 수 있으며 유럽의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사회봉사는 우리나라의 체질을 강화하며 의료 봉사 보호, 독거노인 보호, 장애인 봉사 보호, 사회구조, 해외 구조활동, 교육 홍보 부문의 인력을 포함한다. 정부의 공공봉사 능력의 증진 계획으로 사회봉사는 사회복지와 공익을 높이며 높은 질의 복지 국가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이것이 대체복무의 정책 목표이다. 의료봉사, 환경보호봉사, 교육봉사, 문화봉사 및 사회봉사 등 본질적으로 사회봉사 전반의 일이다. 장래에는 사회봉사의 체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용기관과 협력하여 상술된 사회봉사분야에 대체복무인력을 배치하고 관련기관의 인력을 상호 운용 보완토록 한다.

2. 복무기간의 검토로 입영대상자들을 흡수한다.

대체복무는 성실성이 요구되는 성격 및 봉사의 근면함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 병역복무자들과 다른 점은 업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각 복무 작업의 성격이 많은 차이가 있다. 국가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모두가 다른 기능과 공헌도를 가지고 있다. 병역 대상자들이 대체복무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또한 국군상비역 복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상비역과 대체역 복무기간은 대체복무기간이 상비역 복무기간보다 짧을 수 없는 원칙하에 병역을 가속하여 보유군을 징집하고 병역대상자를 초과하여 징집하는 문제를 완화한다.

3. 신청자의 작업방식을 개선하여 대체복무자의 질을 향상시킨다.

대체근무제의 질의 향상은 대체근무제 실행정책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대체복무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법원에서 심의 통과한 대체근무제 조항을 실시, 범위를 넓힌 「전문적인 자격증」 조건 및 「형사전과기록자의 한계 및 그 복(역)류별」 등 조처로 대체복무자의 질을 높인다. 또한 대체복무 신청자를 수정한 시험방식으로 채용하여 원래 입영 후 역별을 분류하기 위해 수정을 한 병역자가 입영 전 먼저 역별을 신청한다. 그리하여 전문성이 발휘되어 복무자가 충분히 배우고 선용하도록 한다.

4. 편성 감독을 강화하게 하고 등록 복무자의 근면 및 생활관리를 하도록 협력 실행 가능케 한다.

계속 훈련하고 지도조 편성 및 조처 등을 강화한다. 부단히 정기, 비정기적으로 방문 감독하여 연락하고 이로 성실하게 일하는지 등의 문제를 이해한다. 적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행 가능한 병역으로 근면 및 생활관리를 시킨다. 연구하여 「관리수첩」을 만들고 주관기관에 정책이념을 전달한다. 작업관념을 소통(교류)하고 관리방법을 통일 적극적으로 주관 기관을 설립 필요 기관 근무처에서 대체복무자 개인 사이에 연결통로와 면밀히 복무자 동태를 파악하여 적시에 통보, 적시에 중대사고에 대처하고 상 기제 통해서 심리편차에 대하여 혹은 행위 실수한 대체복무에게 조언하여 지도한다. 질서있게 순서를 세워 선도하여 위반 및 위험한 요소를 제거한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통제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체복무자의 이미지 및 작업효능을 향상시킨다.

5. 기획봉사 정기검사 계획센터, 조정 회수 기획 설립

「병역법」 제5조 제 1항 및 「대체복무실시조항」 제 13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근무에 군사 기초훈련은 내정부와 국방부에서 처리 두 부서의 공동책임하에 업무분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000년 7월26일 회의에서 「대체복무 군사기초훈련실시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군사훈련 단위방해와 원래 전투임무를 검토한 적 있다. 국군의 원래 전투 임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내정부에서 기획 준비하여 대체복무자의 군사기초훈련사무를 요청하였다. 「대체복무실시조항」 제2조에서 내정부가 지역 정기검사계획 센터를 설립할 것을 규정, 책임지고 각 지역에 병역 및 대체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내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조항에 근거 대체복무훈련, 실제관리에 필요 및 기획봉사 센터를 관리 또한 대체복무자를 조정 회수 기제를 설립하여 관리의 곤혹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대체복무자에게 조언, 지도교육을 재 실시하고 바로잡아주고 편차행위 실행에 가능한 대체복무를 공동 목표로 한다.

6.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병역 관리센터를 설립함:

현재 부분 현(시)정부는 퇴역자를 효율적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미 선, 후로 대체복무 병역관리 센터를 설립했다. 役政部署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다만 관리 센터에서 사용지 허가, 인력관리 및 경비예산등 어려운 문제등 요인을 처리해서 다수 현, 시정부에서는 여전히 실시할 수 없는 내정부가 국방부 간직 영구역을 활용 의견을 조정하여 경비허가 하에 적절히 보조하여 현(시)정부 대체복무 관리센터를 건설해서 근면하게 일하는 부서 관리 압력을 덜어준다.

7. 대체복무자를 보조하여 전문자격증 혹은 국가 시험에 참가하게 하고 이에 생활 계획을 순조롭게 한다:

대체복무자의 권리를 돌보기 위해 근면하게 봉사하도록 사기를 올리고 미리 계획하여 앞으로 복무 감찰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복무자 계획 기초훈련 보조교육 외에 또 다른 부분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 복무별 전문자격증 혹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뜻을 갖고 있는 복무자에게 수업을 받도록 구상한다. 이로 서로 관련되는 자격증 혹은 공무원시험을 보조한다. 평생학습의 적용, 재취업 교육, 직업 재교육 등 교육정책은 국가인력의 질에 전면적인 향상 효과가 있다. 보조(지도)방식에 대해서는 통신 교육을 활용, 대체복무 통신 혹은 장거리 수업 자료 통신 시스템으로 대체복무자의 시험을 도와준다. 다른 기간을 택해서 각 필요한 기관 인원으로 집중 보조한다. 현행 실무예로 법무부 시정사에서 우수한 모범적인 병역자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감시관 인원 시험을 보게 한다. 장래에 그들이 우수한 시정사인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좋은 결심으로 더욱 더 복무자에게 사고력을 촉진할 수 있고 근면하게 일하도록 하는 관리 계획에 유익하다.

8. 대체복무자 퇴역후 공익 봉사 조직(단체)에 들어서다:

대체복무 실시 조항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복무 제도는 정부 공공사무 혹은 기타 사회봉

사를 이행하도록 입법한다. 이 부분 역시 정부 봉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중된 사회봉사 부문을 담당할 목적이 있다. 각 복무별 대체복무에 비추어 볼 때 근면한 봉사는 전문기술을 얻을 수 있고 퇴역후 사회로 돌아갈 때 만약 실무 경험을 사회 각 구석에 영입하면 참가한 공공봉사조직(단체)의 전체 사회 우량화 및 생활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전문적인 역할에서 중단되지 않고 충분한 자아 실현이 필요하다. 초보적인 구상은 내정부에서 대체복무 심의위원회 요구가 각 필요 기관이 사회 봉사 교육, 보조 지도, 문화, 과학, 체육, 소방 구난, 교통 안전, 환경 보호, 위생 보건, 합작 발전, 경제, 연구 자원 인력의 개발, 연합 활동의 발전 및 자원봉사 등 의제를 구성한 정책이었다. 실행 가능한 대체 복무 계획이 그 전문적인 장점을 살려 적당한 성향의 공익 봉사조직(단체)으로 들어섰다. 예로 소방 복무자로 활용했고 내정부 소방서 계획으로 퇴역 후에도 각 지역 의무 소방 작업 대열에 참가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봉사 기능을 확장했다.

9. 예비복무 소집제도를 설립, 재해 방지 구조 기능을 발휘함:

수정한 대체복무 실시 조항, 대체복무, 예비복무 「소집」의 특별규칙을 정하고 전민방위 동원 체계, 민방체계 및 재해 예방 구조 체계와 결합하여 대체복무, 예비복무 소집제도를 설립함. 또한 근면 노동 소집을 계획 처리해서 적시에 전시에 혹은 비상 사변에 발생한 공무 인력 부족을 보충해서 사회 질서 안정에 기여하고, 각 행정체계유지 및 재해방지 구조체계가 정상 진행하도록 한다.

결론의 말

넘치는 병사 수 및 상비병역으로 적합하지 않는 자와 아직 면제 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복무자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그의 장점과 합해서 필요한 기관에서 보조성 작업을 수행하도록 분담시킨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 사무와 기타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게 된다. 사회 각처에서도 고도의 기대화 바람을 갖고 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대체복무제가 2000년 실행이래 이미 필요기관 및 사회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외 평화 조직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체복무 상황을 보고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또한 국군의 사정에 맞는 재실시를 하여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별 진술

양심적 병역 거부자 홍영일

저는 1990년 4월 23일 입영 영장을 받고 구속 기소되어 군사 훈련 거부로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을 선고받고 1992년 5월 3일에 만기 출소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여호와의 증인인 홍영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국제회의를 통해 저와 제 동료 증인들의 병역 거부 입장과 겪은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엄정 중립을 고수하고자 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태 5:44; 요한 18:36; 이사야 2:4)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때때로 언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해결을 폭력과 살인에 의존한다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같은 입장은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 참여가 한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면 병역 거부는 전 지구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인간사의 현실이었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무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현실이 아닌 순수한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종교는 인류의 이상의 지표가 됩니다. 종교인들은 이 면에서 당연히 일반인들과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에게는 내세관이 있고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630만 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세계 2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8만 9000여명)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세계 주요 분쟁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징집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는 6000여명이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235명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또 다른 635명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사망하였습니다. 구 소련에서는 한 지역에서만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포함해 수십 년 간의 형기를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국제 인권 전문가들께서 자리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국제 문서들에는 여러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 거부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39년 33명의 남녀 증인들이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 이래 만 여명에 이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 거부로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970년대 초반 군사 독재가 강화되면서 병역 거부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결합된 병영 내 영창과 교도소에서 개별적으로 겪은 비인간적인 학대와 가혹 행위는 -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적어도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그 결과로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 차치하더라도 입법, 사법, 행정 등 당시 정권의 총체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 사법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되어 나오는 날 병무청 직원들이 연행하여 바로 군부대에 입소시킨 후 군 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하거나; 이미 군사 훈련 거부로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에게 군 교도소 내에서 군사 훈련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형을 추가하거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차 영장을 발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투옥 형량을 두 배로 늘리거나; 한 번 총을 주어 거부하자 다음 날 다시 총을 주고 이를 다시 거부하자 두 번 거부하였으니 경합범이라 하여 1.5배의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군 복무 기간과 형평을 맞추다 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그 사유가 특정 종교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처벌은 당시 도입된 고등학교 교련 수업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청소년에 대한 학교 당국의 자퇴 압력과 더불어 여호와의 증인들을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그룹으로 여기게 만드는 편견을 대규모로 생산해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해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아니 묻혀진,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을 당시인 1990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여전히 단 지 몇 분만에 심리를 마치는 요식적인 재판을 통해 기계적인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으며, 교도소에서는 일체의 가석방이나 행형 성적에 따른 등급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최하위 등급자로서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직무상이든 아니면 국가와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가혹 행위를 해야 했던 분들과 또 그 제도를 입안하거나 시행하신 분들 역시 저희와 다름없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얼마의 가혹 행위도 벌써 잊혀진 과거지사일 뿐이고 그분들을 언제라도 편안히 만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도의 불비로 인해 여전히 ‘때리는’ 자와 ‘맞는’ 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990년 한 해에 병역 거부를 한 이들의 수는 220명이었는데 2001년 한 해에는 80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그 동안의 처벌이 어떠한 교화나 경계의 효과도 없었던, 다시 말해서 복수적 개념의 형벌로 밖에는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 중 얼마의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방식의 평화를 원하는 신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비록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왜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이라는 간단한 답변을 듣고 무척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배와 동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인 양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테러리스트나 광신도에 비해지기도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2000년 초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고 그 동안 묻혀져 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사회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유신 시절부터 자행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강제 입영으로 인해 어느덧 관행화되어 왔던, 입영 후 군사 재판이라는 절차를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간혹 병무청에서 강제 대동 입영을 시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인권 환경이 더 나은 민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을 틀 잡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분수령이 된 주요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려 줌으로써 오늘날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의 미국 병역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제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무죄를 확신 하였음에도 군중의 압력에 밀려 예수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의 그것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해 가고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호의적인 판결을 헌재가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에서 그리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존재해 온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다양한 종교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은 초창기 얼마를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독점적인 신념인 것처럼 치부되어 기성 종교계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마련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종교적, 사상적 견해와 관계없는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형태 이외의 양심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시각도 있다고 느껴

집니다. 또한 병역 관련 정부 부처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될 정도의 사회 시스템이 가져올, 확실성과 기계적인 복종을 벗어난, 독창적이고 관용할 줄 아는 사회 구조로의 변화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전세계 어느 대체복무 시행 국가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는 관념적인 두려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없는 변화는 그 자체가 한계를 지닙니다. 최근의 통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전부터 존재해 온 종교적 편견과 차별의 그늘을 느낍니다. 지난 해 보석 신청을 한 전체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 154명 가운데 45%인 단지 69명만이 보석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통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비록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비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탄원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도소 내에서조차 주요 종교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종교 활동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교도소 내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보조 인력인 것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의 밑바탕이 그들이 받은 종교적 훈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관계 당국은 인권 차원을 떠나 양질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종교 활동을 보장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실 정도로 소수자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 전체 여호와의 증인 수감자 1542명 중 이전에 군사 재판을 통해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숫자가 572명입니다. 우선 이들에게라도 민간 재판으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정도의 사회적 관심을 보여 주셔서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받는 상처의 깊이도 훨씬 적어질 것이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기가 한결 수월해 질 것입니다. 이제는 제 후배로서 이 일을 겪어야 할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이 죽음의 무덤과도 같은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가 그런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진술의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